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000-000660-01

2013년도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연구용역

『출입국자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국제비교성 제고-

2013. 7.

제 출 문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출입국자통계」 품질개선 컨설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7월

다산경제연구원 원장 ㉠

연구진

책 임 연 구 원	이 종원, 다산경제연구원장(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 구 원	노 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부교수
연 구 보 조 원	금 효성
통 계 청	김 경 용, 통계청 품질관리과 사무관 윤 은 경, 통계청 품질관리과 주무관

주요 자문위원

이 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

요 약 문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출입국자통계」 품질개선 연구
주제어	출입국자통계, 법무부, 국제비교성, OECD기준, UN권고안
연구기간	2013년 5월 7일 - 2013년 7월 31일
연구기관	다산경제연구원
연구진구성	책임연구원: 이종원 다산경제연구원장 연구원 :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연구보조원: 금효성
<p>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 방안 도출에 기본 목적을 두고, UN 권고안과 OECD 기준 등의 검토와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p> <p>UN권고안과 OECD기준의 검토를 통해서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한 기본 접근법으로서 체류자격유형분류의 변경이나 통계수집과정의 개선보다 통계 집계 개선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을 제시하였다.</p> <p>OECD 통계에 보고 집계된 우리나라의 출입국자통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OECD통계에서 누락된 우리나라에 관한 일부 항목들은 대부분 기존의 행정 통계나 조사 통계를 통해 수집 가능함을 보였다. 둘째, OECD 국제이주 기준을 우리나라의 출입국자통계에 적용하는데 몇 가지 오류들(가령, 문화예술(D-1), 취재(D-5), 선원취업(E-10))의 수정방안을 제안하였다.</p> <p>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정리할 출입국자통계에 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특수한 이주 상황을 감안해서 OECD 기준에 UN 권고안을 통합하여 이주자 유형을 제외집단, 단기적 이주자, 장기적 비영주권자, 영주·준영주권자 등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이주자의 세분류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영주·준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고용 이주, 가족 이주, 인도주의적 이주, 기타 등으로 세분하고, 장기적 비영주권자 유형에서는 고용 이주, 교육훈련 이주, 가족 이주, 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단기적 이주는 단기 연수, 관광취업, 계절적 근로, 기타 등의 유형으로 세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장기적 이주자와 영주·준영주권자 등에 관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다른 통계들(가령, 전체 인구 대비 이주자(장기 이주자, 영주·준영주권자)의 비율, 근로연령 인구 대비 이주자(장기 이주자, 영주·준영주권자)의 비율, 인구 증가율에 대한 순 이주자 기여 비율 등)을 산출할 것을 제안하였다.</p>	

차 례

제 1 장 들어가는 말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3
제 3 절 연구의 구성	4
제 2 장 우리나라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통계 현황	5
제 1 절 행정기관별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통계	5
제 2 절 소결: 외국인 통계의 주요 개념적 범주의 차이	38
제 3 장 출입국자통계의 국제 기준 : UN의 권고안과 OECD 기준을 중심으로	42
제 1 절 들어가는 말	42
제 2 절 UN의 국제이주 통계 권고안	43
제 3 절 OECD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	46
1. OECD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	46
2.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의 적용 방식: 주요국 사례	51
3. OECD의 국제이주 통계	55
가.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통계	56
나. OECD Migration Databases와 OECD.StatExtracts 통계	61
제 4 절 소결	63

제 4 장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에 관한 평가와 개선방안 ..	66
제 1 절 들어가는 말	66
제 2 절 OECD 누락통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	67
1. 누락 현황	67
2. 개선 방안	69
제 3 절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에 대한 OECD 기준 적용 현황	71
제 4 절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 방안	76
1. 한국의 체류자격 유형	76
2. OECD기준에 따른 한국의 체류자격의 분류	79
3. UN 권고안에 따른 한국 체류자격 분류	82
4. UN 권고안과 OECD 기준에 따른 통합적 개선 방안	84
제 5 절 소결	87
제 5 장 결론	89
제 1 절 들어가는 말	89
제 2 절 연구 결과의 요약	90
1. 제 2 장 연구 결과 요약	90
2. 제 3 장 연구 결과 요약	91
3. 제 4 장 연구 결과 요약	94
제 3 절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 방안	96
참고문헌	104

<표 2-24> 외국인 주민의 국적별 현황(2012)	25
<표 2-25> 외국인기본정보 마스터의 주요 변수	28
<표 2-26> 사업장 기본정보 마스터의 주요 변수	29
<표 2-27>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자수	30
<표 2-28>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업종별 도입자수	30
<표 2-29> 외국인근로자 보험급여 지급현황	31
<표 2-30>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영역별 조사항목	33
<표 2-31>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Layout	34
<표 2-32> 현원,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35
<표 2-33>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35
<표 2-34>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35
<표 2-3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조사항목(사업체 조사)	36
<표 2-36>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	37
<표 2-37>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38
<표 2-38> 부처별 통계 현황(종합)	39
<표 3-1> 영구적 이주자 관련 통계표 예시: 2012년 판	57
<표 3-2> 한시적 이주자 관련 통계표 예시: 2012년 판	58
<표 3-3> 유학생 관련 통계표 예시: 2012년 판	58
<표 3-4> 국가별 섹션 통계표 예시: 2012년 판	60
<표 3-5> 국적별 외국인구 유입량 원시자료 통계표 예시: 2012년 보고용 예시	62
<표 3-6> 유학생 체류자격 변경 원시자료 통계표 예시: 2012년 보고용 예시	63
<표 4-1> OECD의 우리나라 비자 유형별 체류기간 추정: 2010년 자료	73
<표 4-2> OECD의 우리나라 비자별 이주 유형 구분	75
<표 4-3> 체류자격 유형	76

<표 4-4>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77
<표 4-5> OECD의 우리나라 비자별 이주 유형 구분 개선 방안 제안	81
<표 4-6> UN 권고안 적용 방안 제안	83
<표 4-7>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자통계를 위한 이주자 유형 구분 제안	86
<표 5-1> OECD의 우리나라 비자별 이주 유형 구분 개선 방안	99
<표 5-2> 체류자격별 이주자 유형 구분 제안	101
<표 5-3> 이주 유형별 출입국자통계 정리 방안 제안(예시)	101
<표 5-4> 출입국자통계 국제비교성 제고방안(요약)	103

그림 차례

<그림 1-1> 체류 외국인 추이	2
<그림 2-1> 사증발급인정서 견본	7
<그림 2-2> 외국인주민 변동추이	24
<그림 2-3>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2012)	25
<그림 2-4> 국적별 분포(2012)	26
<그림 2-5> 시도별 분포(2012)	26
<그림 2-6> 시도별 비율(%)(2012)	27

제 1 장 들어가는 말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가 간 교역규모의 확대와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의 국제이동이 급격히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출생 이주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서 외국 출생 이주자들이 주된 사회 현상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가령, 2007년 1,066천명이던 외국인의 규모가 2012년에 1,445천명으로 5년 동안 35% 정도 증가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의 유형도 종래에는 단순노무 분야 종사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투자가 등으로 그 구성도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외국의 우수인재 및 유학생의 유치, 단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출입국 외국인정책의 선진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런 점에서 관련통계의 정비 및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방향의 모색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출입국자통계는 내외국인 출입국 현황을 체류자격별, 국적별로 유량(flow)과 저장(stock)으로 파악하여 정리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출입국자통계는 출입국 관리를 위한 행정통계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매년 연말 기준으로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를 작성하여 연보 형태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통계월보를 작성하여 요약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출입국자 통계(flow), 체류 외국인 통계(stock), 결혼이민자 통계, 국적통계, 외국국적동포 통계, 난민통계, 불법체

류 통계, 출입국사범통계 등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체류 외국인 추이

(단위 : 만 명, %)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년도

출입국자통계는 국가마다 이주정책이나 비자, 체류허가 등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작성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국제이주의 통계에 관한 UN의 권고사항이나 OECD의 회원국간 이주통계의 조정(harmonization) 노력 등이 그것들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이주 통계도 가능한 선에서 국제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우리나라 이주정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여전히 국제기준에 부합하거나 국제비교에 적합한 방식의 통계집계 방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통계청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인 『출입국자 통계 2008년 정기 통계품질진단』(진기남·천새롬 저, 2008)도 우리나라 출입국자 통계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국제기준에 맞게 산출하는 개선방안을 찾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¹⁾.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국제기

준 혹은 국제비교에 적합한 통계를 산정하기 위해서 현행 출입국자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초점은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방안을 찾는 데 있다. 본 연구가 실시된 직접적 배경 중의 하나가 2008년 통계청에서 발주했던 용역보고서인 『출입국자 통계 2008년 정기 통계품질진단』(진기남·천새롬)이 국제비교 측면에서 출입국자 통계의 품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외국인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품질 제고를 위한 통계수집 및 작성과정 등에서 어떤 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국제기준(UN, OECD)의 출입국통계의 통계작성 기준 분석
- 2) 국제통계(UN, OECD)의 출입국통계와 국내 통계의 불일치 현황 분석
- 3) 국내통계의 국제비교 적합성이 미흡한 내용을 중심으로 원인을 진단
- 4) 국제비교 적합성제고를 위한 통계수집방법의 개선방안 : 단기, 중장기 과제
- 5) 국제비교 적합성제고를 위한 통계산출방법의 개선방안 : 단기, 중장기 과제

-
- 1) 본 연구의 출발점이 『출입국자통계 2008년 정기 통계품질진단』의 지적에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그 보고서는 우리나라 출입국자 통계의 국제비교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체류자격의 경우, OECD 출입국자통계자료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비교성은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출입국자통계자료에서의 범주는 언론과 같은 미디어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료를 제공하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범주이지, 범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분류된 것이 아니다. 외부 전문가가 OECD에 출입국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법무부 출입국통계자료와 분류체계 및 통계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출입국자통계의 국제 기준으로서 OECD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과 UN의 국제이주 통계 권고안 등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 밖에 ILO도 1999년부터 LABORSTA를 통해서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Statistics」를 제공하고 있지만, 최신 자료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어서 비교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박성일, 2012)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국제기준에 관한 문헌연구, 해외전문가의 의견수렴,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회의 및 방문 인터뷰, 통계자료의 분석 및 재 개념화, 시행기관과의 정례회의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 우리나라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통계 현황을 정리하고, 제 3 장에서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에 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제 4 장에서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를 국제이주 통계에 관한 UN 권고안과 OECD 기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장 우리나라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통계 현황

제 1 절 행정기관별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통계²⁾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가. 출입국자통계 공표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시 위하여 출입국자통계 월보, 분기보, 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사증발급, 출입국심사, 체류민원처리, 조사사범 보호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축적되는 각 통계자료 및 해당부서의 자료를 기초로 집계·제공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를 통해 외국인관련 통계를 게재하고 있다.

제공되는 통계정보는 <표 2-1>과 같다. 연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결혼이민자, 국적, 외국국적동포, 난민불법체류자 별로 구분되어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체류외국인은 전체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유학생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체류외국인의 인적속성(국적, 체류자격, 성, 연령) 및 거주지역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통계에는 연도별, 국적별, 지역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정보를 담고 있다. 국적통계는 귀화 및 국적회복자, 혼인귀화자,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자별로 구분하여 정보가 제공된다. 외국국적동포 통계는 체류자격 및 국적별 그리고

2) 여기서의 내용은 이규용외(2010)의 자료를 토대로 이후 변화된 내용 및 해당 보고서에서 누락한 정보 등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에 전반적인 내용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표나 내용은 연구의 목적상 그대로 인용하였다.

거소지역별 통계가 제공되며, 난민통계는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의 국적, 사유, 성, 연령, 지역, 체류기간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경우도 국적, 사유, 성, 연령, 지역, 체류기간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통계는 국적 및 체류자격, 체류기간별 정보가 제공된다.

<표 2-1> 통계제공 체계 및 제공정보

구분	제공 통계
출입국통계월보	출입국현황, 외국인체류관리현황,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국적 및 난민업무 처리현황, 외국적 동포 현황
출입국통계분기보	출입국자현황, 체류외국인현황, 외국인근로자현황, 유학생현황, 결혼이민자현황, 국적 및 난민 현황, 출입국항별 현황, 기타현황
출입국통계연보	출입국자 통계, 체류외국인 통계, 결혼이민자통계, 국적통계, 외국국적동포통계, 난민통계, 불법체류통계출입국사범통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는 법무부가 외국인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목적으로 집계한 자료로 외국인의 국적, 비자유형, 성, 연령 등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입국자통계의 자료의 토대는 사증발급신청서 및 인증서에 기입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증발급신청서 및 인증서에 기입된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사증발급신청서와 인증서상 주요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성, 국적, 출생지, 혼인여부, 직장 및 직업과 같은 개인인적정보와 입국과 관련된 정보(체류자격, 입국목적, 체류예정기간, 체류지), 과거 한국체류경험여부, 동반가족, 국내보증인 연락처(성명, 생년월일, 성, 국적, 직장 및 직위) 관련 사항이다. 참고로 사증발급신청서 견본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사증발급인정서 견본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5.7.8>

寫 眞 P H O T O 35×45mm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인정번호(CERTIFICATE No.) 호	사 증 발 급 인 정 서 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피초청자 INVITEE			
성 명 NAME IN FULL		한자성명 漢字姓名	
성 별 SEX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직장 및 직위 PLACE & POSITION OF EMPLOYMENT			
○초청자 INVITER			
성 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 별 SEX	국 적 NATIONALITY	직장 및 직위 OCCUPATION	
○사증발급 인정사항 ITEMS OF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사증종류 VISA
근 무 처 WORK AT		비 고 REMARKS	
「출입국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초청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인정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VITEE IS CONFIRMED TO BE ISSUED A VISA,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9 OF THE IMMIGRATION LAW.			
발 급 일 DATE OF ISSUE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CHIEF OF SEOUL IMMIGRATION OFFICE			
주의(NOTICE) 1. 이 인정서는 발급일부터 3월 내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THIS CERTIFICATE WILL BE INVALID IF THE INVITEE FAILS TO APPLY FOR A VISA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2. 이 인정서는 사증발급을 신청한 때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BE SUBMITTED TO THE KOREAN OVERSEAS MISSION IN CASE OF APPLICATION FOR A VISA.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m²)

나. 출입국 및 체류 외국인 통계

□ 출입국자통계

출입국자통계에서는 해당 기간의 출입국자 총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출입국자란 대통령령에서 정한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 기타 장소를 통하여 입출국한 내외국인 승객 및 승무원을 가리킨다. 이에 대한 통계는 국민과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하여 승객과 승무원으로 구분하여 입국자와 출국자 수를 표로 작성한다. 이를 토대로 출입국자 총 수에서 국민이 차지하는 비율과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 분석하여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추가로 국민 출국자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통계를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표 2-2> 출입국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년 05월			2013년 05월			
	출입국자	입국자	출국자	출입국자	입국자	출국자	
총 계	4,114,351	2,060,435	2,053,916	4,248,084	2,111,189	2,136,895	
국민	소계	2,249,393	1,123,313	1,126,080	2,406,124	1,193,504	1,212,620
	승객	2,031,148	1,011,075	1,020,073	2,179,986	1,077,711	1,102,275
	승무원	218,245	112,238	106,007	226,138	115,793	110,345
외국인	소계	1,864,958	937,122	927,836	1,841,960	917,685	924,275
	승객	1,683,938	843,168	840,770	1,569,149	785,687	783,462
	승무원	181,020	93,954	87,066	272,811	131,998	140,813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 체류외국인 통계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데 체류외국인 통계는 특정 기준 시점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전체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체류외국인은 단기 체류외국인과 장기 체류외국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는 자이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의 현황을 나타낸다. 여기서 거소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체류외국인 통계는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장단기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표 2-3> 체류외국인 총괄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등 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12년 05월	1,440,278	979,289	303,234	157,755
2013년 05월	1,489,632	948,034	335,448	206,150
전년대비 증감률	103.4 ↑	96.8 ↓	110.6 ↑	130.7 ↑
구성비	100%	63.6%	22.5%	13.8%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 체류자격별 현황

체류외국인 자료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사증)에 따라 수록되어 있다. 체류자격별로 총 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동일하게 국적별로도 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국적별·연령별, 국적별·연도별 자료도 제공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내국인과 달리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다.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합법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라 한다.

체류외국인 현황은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체류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수립, 불법체류자의 불법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국인의 노동시장 보호 정책,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사증면제 협정국가 효력의 일시정지 등 외국인의 출입국 정책 등에 사용된다.

<표 2-4>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2013.05.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12년 5월 총체류자	2013년 5월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 계	1,440,278	1,489,632	1,309,935	179,697
사증면제(B-1)	40,457	41,881	22,112	19,769
관광통과(B-2)	85,367	76,572	62,170	14,402
단기방문(C-3)	103,738	137,643	92,933	44,710
단기취업(C-4)	841	819	650	169
유 학(D-2)	67,516	63,705	60,706	2,999
기술연수(D-3)	4,199	3,727	1,464	2,263
일반연수(D-4)	21,250	21,170	15,873	5,297
종 교(D-6)	1,598	1,601	1,540	61
상사주재(D-7)	1,598	1,619	1,598	21
기업투자(D-8)	7,441	6,498	5,872	626
무역경영(D-9)	3,843	6,735	6,714	21
교 수(E-1)	2,678	2,759	2,747	12
회화지도(E-2)	22,526	20,942	20,857	85
연 구(E-3)	2,685	2,811	2,802	9
기술지도(E-4)	180	205	201	4
전문직업(E-5)	636	681	657	24
예술홍행(E-6)	4,622	4,742	3,308	1,434
특정활동(E-7)	16,512	17,743	15,369	2,374
비전문취업(E-9)	243,746	235,766	180,748	55,018
선원취업(E-10)	9,448	10,899	6,837	4,062
방문동거(F-1)	48,407	56,243	52,022	4,221
거 주(F-2)	102,423	53,050	43,222	9,828
동 반(F-3)	17,654	19,200	18,719	481
재외동포(F-4)	159,212	207,975	205,676	2,299
영 주(F-5)	73,597	90,908	90,908	0
결혼이민(F-6)	44,385	100,089	99,234	855
방문취업(H-2)	294,964	237,530	231,671	5,859
기 타	58,755	66,119	63,325	2,794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3.5

□ 등록외국인 통계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청에 제출하면 즉시 외국인 등록 처리가 이루어진다. 등록외국인에 대한 통계는 연령, 거주지역, 국적, 체류자격 등의 분류기준으로 나뉘어 제공된다.

<표 2-5>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단위 : 명)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³⁾	전북	전남
948,034	246,148	35,173	295,655	13,125	25,469	49,992	22,379	23,813
	경북	경남	제주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40,890	65,776	9,383	20,352	22,237	48,248	14,862	14,532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3.5

□ 단기 체류외국인

단기 체류외국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체류 외국인을 말한다. 단기 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보는 연도별, 국적 및 체류자격별, 국적 및 연령별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3) 세종특별자치시 2,395명 포함

<표 2-6> 연도별 단기 체류외국인

(단위 : 명)

연 도	단기체류외국인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2002년	357,340	132,954	224,386
2003년	218,426	136,584	81,842
2004년	259,464	140,248	119,216
2005년	236,958	140,585	96,373
2006년	249,542	145,707	103,835
2007년	266,011	151,716	114,295
2008년	263,402	156,916	106,486
2009년	247,590	153,977	93,613
2010년	258,673	169,435	89,238
2011년	277,596	193,242	84,354
2012년	324,504	240,791	83,713
2012년 5월	303,234	217,702	85,532
2013년 5월	335,448	252,412	83,036
전년대비 증감률	10.6%	15.9%	-2.9%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3. 5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통계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통계는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의 수를 보여준다. 여기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가리키며, 단순기능인력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의 사증을 보유한 외국인이다.

<표 2-7>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총괄

(단위 : 명)

구 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534,897	465,847	69,050	
전문 인력	소 계	50,702	46,591	4,111
	단기취업(C-4)	819	650	169
	교 수(E-1)	2,759	2,747	12
	회회지도(E-2)	20,942	20,857	85
	연 구(E-3)	2,811	2,802	9
	기술지도(E-4)	205	201	4
	전문직업(E-5)	681	657	24
	예술홍행(E-6)	4,742	3,308	1,434
	특정활동(E-7)	17,743	15,369	2,374
단순 기능 인력	소계	484,195	419,256	64,939
	비전문취업(E-9)	235,766	180,748	55,018
	선원취업(E-10)	10,899	6,837	4,062
	방문취업(H-2)	237,530	231,671	5,859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3. 5

□ 외국인 유학생 통계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에 대한 통계는 2009년까지는 유학(D-2) 전체 및 동포연수(D-4-4)로 이루어졌지만 2010년부터 유학(D-2) 전체 및 한국어연수(D-4-1)로 바뀌었다. 외국인 유학생 관련 통계는 국적별로 제공된다. 이 자료는 국외유학 관련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기본정책 수립,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표 2-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국적명	총계	유학(D-2)	한국어연수(D-4-1)
총 계	83,073	63,705	19,368
중 국 ⁴⁾	55,255	42,865	12,390
한국계	1,217	1,126	91
몽 골	4,641	2,911	1,730
베 트 남	3,448	2,638	810
일 본	2,712	1,633	1,079
미 국	1,179	1,046	133
인도네시아	909	828	81
인 도	824	783	41
파 키 스 탄	764	682	82
우즈베키스탄	724	432	292
프 랑 스	689	613	76
타 이 완	713	484	229
말레이시아	730	559	171
네 팔	584	465	119
방글라데시	570	534	36
기 타	8,114	6,106	2,008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3. 5

□ 국적통계

국적통계에는 귀화와 국적회복자에 대한 수치가 표시된다. 귀화는 순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회복은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며, 국적상실은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한국계 포함

국적통계에서는 국가별, 유형별로 국적취득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한다. 이 통계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우수 인력 유치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행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표 2-9〉 국가별 유형별 국적취득 현황

(단위 : 명)

연도 \ 종류	총 계		귀 화		국 적 회 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08년	23,629	15,258	22,735	11,518	894	3,740
2009년	23,846	26,756	22,849	25,044	997	1,712
2010년	25,350	17,323	24,099	16,312	1,251	1,011
2011년	26,785	18,355	24,034	16,090	2,751	2,265
2012년	24,290	12,528	21,121	10,541	3,169	1,987
2013. 5.	8,654	6,210	7,408	4,904	1,246	1,306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13. 5

2. 통계청

가. 국제인구이동 통계

국제인구이동 통계는 현재인구 작성과 장래인구 추계 및 인력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연혁을 보면 1999년 이전에는 장단기의 구분 없이 총이동자에 의해 국제인구이동통계를 작성하였다. 1999년~2003년에는 출입국신고서의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단기 이동자를 제외한 장기이동자에 의해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내부 활용용으로 작성하였으며 2004년 이후 부터는 매년 국제인구이동통계결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고 국제인구이동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조사범위는 전국이며 조사내용은 성*연령별*내외국인별 출입국자, 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성*국적별 외국인 출입국자이고, 조사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조사는 출입국 현황 전산자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입수하여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자료만 집계하고 있다.

<표 2-10> 내외국인 국제이동

(단위 : 명)

		2009				2010				2011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국제 순이동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국제 순이동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국제 순이동
전 체	계	1,162,874	591,626	571,248	20,378	1,181,935	632,102	549,833	82,269	1,226,045	658,475	567,570	90,905
	남자	609,759	303,089	306,670	-3,581	610,144	326,069	284,075	41,994	646,614	345,990	300,624	45,366
	여자	553,115	288,537	264,578	23,959	571,791	306,033	265,758	40,275	579,431	312,485	266,946	45,539
내 국 인	계	696,559	358,782	337,777	21,005	692,789	339,032	353,757	-14,725	701,094	351,226	349,868	1,358
	남자	350,169	181,829	168,340	13,489	344,669	169,746	174,923	-5,177	354,313	177,276	177,037	239
	여자	346,390	176,953	169,437	7,516	348,120	169,286	178,834	-9,548	346,781	173,950	172,831	1,119
외 국 인	계	466,315	232,844	233,471	-627	489,146	293,070	196,076	96,994	524,951	307,249	217,702	89,547
	남자	259,590	121,260	138,330	-17,070	265,475	156,323	109,152	47,171	292,301	168,714	123,587	45,127
	여자	206,725	111,584	95,141	16,443	223,671	136,747	86,924	49,823	232,650	138,535	94,115	44,420

<표 2-11> 국적별 외국인 국제이동

(단위 : 명)

국적별	2011			
	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국제순이동
합계	524,951	307,249	217,702	89,547
중국	243,922	149,208	94,714	54,494
미국	51,459	28,061	23,398	4,663
베트남	42,028	27,873	14,155	13,718
타이	20,557	10,340	10,217	123
필리핀	20,509	9,565	10,944	-1,379
인도네시아	14,211	8,053	6,158	1,895
우즈베키스탄	13,584	8,180	5,404	2,776
일본	12,006	5,549	6,457	-908
캐나다	11,603	5,956	5,647	309
몽골	11,480	4,268	7,212	-2,944
스리랑카	8,866	5,892	2,974	2,918
캄보디아	7,426	6,444	982	5,462
네팔	5,434	4,339	1,095	3,244
인도	4,945	2,415	2,530	-115
러시아(연방)	4,858	2,560	2,298	262
방글라데시	3,859	2,295	1,564	731
영국	3,804	2,086	1,718	368
파키스탄	3,552	1,681	1,871	-190
미얀마	3,384	2,571	813	1,758
오스트레일리아	3,157	1,766	1,391	375
타이완	3,125	1,629	1,496	133
프랑스	2,690	1,295	1,395	-100
독일	2,156	1,017	1,139	-122
남아프리카공화국	1,655	919	736	183
뉴질랜드	1,497	898	599	299
카자흐스탄	1,461	774	687	87
말레이시아	1,284	594	690	-96
키르기스스탄	1,282	656	626	30
사우디아라비아	1,081	865	216	649
기타	18,076	9,500	8,576	924

나. 인구동향조사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 주택, 보건, 사회복지, 교육, 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2-12> 다문화 유형별 혼인 건수

(단위: 건)

성별	유형별	2008	2009	2010	2011
남자	계	36,629	33,862	35,098	30,695
	한국인(출생기준)	27,987	24,874	26,182	22,363
	외국인	8,041	8,158	7,961	7,497
	한국인(귀화기준)	601	830	955	835
여자	계	36,629	33,862	35,098	30,695
	한국인(출생기준)	7,475	7,223	6,685	6,409
	외국인	28,163	25,142	26,274	22,265
	한국인(귀화기준)	991	1,497	2,139	2,021

<표 2-13> 다문화 유형별 이혼 건수

(단위: 건)

성별	유형별	2008	2009	2010	2011
남자	계	12,430	13,653	14,319	14,450
	한국인(출생기준)	9,152	10,089	10,537	10,829
	외국인	3,079	3,227	3,236	3,146
	한국인(귀화기준)	199	337	546	475
여자	계	12,430	13,653	14,319	14,450
	한국인(출생기준)	3,070	3,233	3,140	2,990
	외국인	7,901	8,246	7,852	8,349
	한국인(귀화기준)	1,459	2,174	3,327	3,111

<표 2-14> 다문화 유형별 출생아 수

(단위: 명)

성별	유형별	2008	2009	2010	2011
남자	계	13,443	19,024	20,312	22,014
	한국인(출생기준)	11,321	16,566	17,431	18,593
	외국인	1,683	2,031	2,453	2,862
	한국인(귀화기준)	439	427	428	559
여자	계	13,443	19,024	20,312	22,014
	한국인(출생기준)	1,753	1,918	2,315	2,640
	외국인	10,128	15,199	15,645	16,420
	한국인(귀화기준)	1,562	1,907	2,352	2,954

<표 2-15> 다문화 유형별 사망자 수

(단위: 명)

유형별	2008	2009	2010	2011
계	1,043	1,338	1,506	1,557
한국인(출생기준)	902	1,028	1,132	1,178
외국인	86	91	100	107
한국인(귀화기준)	55	219	274	272

다. 외국인 고용조사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 정책 수립·분석의 기초 자료를 생산 및 제공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법무부 「등록외국인 명부」와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 명부」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만 15세 이상 외국인 10,000명이다. 조사기준일은(작성기준시점)은 2012. 6. 15.이며 조사대상기간은 2012. 6. 10.(일)~6. 16.(토)이고 조사 실시기간은 2012. 6. 22.(금)~7. 6.(금)(15일간)이다.

조사원은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화 또는 자기기입식 조사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총 34개 항목으로 기본 항목 9개 항목, 경제활동 상태에 관한 사항 18개 항목, 체류에 관한 사항 4개 항목, 유학생에 관한 사항 3개 항목이다.

<표 2-16> 2012년 성별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계	남자	여자
15세 이상 외국인	1,114	623	491
경제활동인구	824	534	290
취업자	791	518	274
실업자	33	17	16
비경제활동인구	290	89	201
경제활동참가율	74.0	85.8	59.1
고용률	71.0	83.1	55.7
실업률	4.0	3.1	5.6

<표 2-17> 2012년 체류자격별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계	비 문 취 업 (E-9)	방 문 취 업 (H-2)	전 문 인 력 (E-1~ E-7)	유 학 생 (D-2, D-4-1)	재 외 동 포 (F-4)	영 주 영 주 (F-5)	결 혼 이 민 (F-2- 1, F-6)	기 타
15세 이상 외국인	1,114	239	287	48	83	160	73	129	96
경제활동인구	824	238	254	47	17	103	50	65	49
취업자	791	238	241	47	13	99	47	60	45
비경제활동인구	290	0	33	0	66	57	23	63	47
경제활동참가율	74.0	99.9	88.5	99.4	20.1	64.5	68.9	50.8	51.1
고용률	71.0	99.8	84.1	99.4	15.6	61.9	64.7	46.9	46.8

<표 2-18> 2012년 교육수준별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계	초 졸 이 하	중 졸	고 졸	대 졸 이 상 (전 문 대 포 함)
15세 이상 외국인	1,114	87	226	500	301
경제활동인구	824	58	178	377	212
취업자	791	56	171	363	201
비경제활동인구	290	30	48	123	89
경제활동참가율	74.0	66.1	78.6	75.5	70.4
고용률	71.0	64.2	75.8	72.7	66.8

<표 2-19> 2012년 성별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수준

(단위: 천명)

	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759	52	519	143	45
남자	503	15	330	122	36
여자	256	37	189	22	9

<표 2-20> 외국인 실업자 구직경로

(단위: %)

구직경로	2012
전체	100.0
공공직업 알선기관	13.9
민간직업 알선기관	21.9
대중매체	24.9
학교, 학원	5.7
친척, 친구, 동료	33.4
기타	0.2

<표 2-21>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변경여부

(단위: %)

	계	비전문 취업 (E-9)	방문 취업 (H-2)	전문 인력 (E-1~ E-7)	유학생 (D-2, D-4-1)	재외 동포 (F-4)	영주 (F-5)	결혼 이민 (F-2-1, F-6)	기타
체류자격 (변경)	14.0	0.4	8.6	3.9	12.1	28.8	48	19.2	12.6
체류자격 (변경안함)	86.0	99.6	91.4	96.1	87.9	71.2	52	80.8	87.4
구성비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2-22>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만료 후, 한국 내 계속체류 희망여부 및 방법

(단위: %)

	계	비전문 취업 (E-9)	방문 취업 (H-2)	전문인력 (E-1~ E-7)	유학생 (D-2, D-4-1)	재외 동포 (F-4)	결혼이민 (F-2-1, F-6)	기타
구성비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체류 (원하지 않음)	15.8	20.8	7.8	33.0	36.5	12.6	2.4	24.2
체류(원함)	84.2	79.2	92.2	67.0	63.5	87.4	97.6	75.8
체류기간연장	47.9	71.9	45.6	58.1	48.0	51.8	18.0	44.9
체류자격변경	5.9	3.3	11.0	2.1	10.6	3.3	1.8	4.5
영주자격취득	16.9	2.3	28.5	5.5	3.8	23.9	24.6	13.4
한국국적취득	11.1	1.5	6.3	1.1	0.8	7.6	52.9	12.8
기타	0.5	0.2	0.8	0.2	0.3	0.9	0.3	0.2

3. 안전행정부의 외국인 주민통계

안전행 정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계주민의 생활안정, 지역사회 정착 등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외국계주민에 대한 유형별·국적별·성별 등 현황조사 실시하고 있다. 2012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⁵⁾ 조사목적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는데 있으며 작성주기는 매년 1회이고 작성기준은 작성대상년도 1월 1일 00시 기준이다. 작성기간은 작성대상년도 5월 ~ 7월이며 조사대상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이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통계 현황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작성방법은 등록 외국인 현황 자료(법무부 제공)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료와

5) 안전행정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보도자료. 외국인주민 통계는 우리나라에 90일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법무부 제공),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법무부의 체류외국인현황 통계는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와 90일 초과외국인 장기체류자를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자)’로 사용한 용어를 2012년부터 ‘외국국적동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연계하여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거주 외국인주민의 국적·성·유형별 현황, 세대수 등이다. 조사대상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등록을 하는 90일 초과 체류자)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 외국인이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적취득자인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귀화자와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부에서 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0~18세)이다.

동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주민은 ‘11년 1,265,006명 대비 144,571명 증가한 1,409,577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8%이다. 이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117,481명(79.3%)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588,944명(41.8%), 결혼이민자 144,214명(10.2%), 유학생 87,221명(6.2%), 외국국적동포 135,020명(9.6%), 기업투자자 등 기타 162,082명(11.5%)이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292,096명(20.7%)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국적취득자 123,513명(8.7%)이고 외국인주민 자녀 168,583명(12%)이다. 국적취득자는 혼인귀화자 76,473명(5.4%)이고 기타사유 귀화자 47,040명(3.3%)이다.

<그림 2-2> 외국인주민 변동추이

(단위 : 천명)



주: () 내는 전체 외국인주민 인구 대비 비율임

자료 : 안전행정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보도자료.

<표 2-23> 외국인 주민 현황(2012)

(단위 : 명)

구분	주민등록 인구	인구 대비 (%)	외국인 주민수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계주민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 생	외국국 적동포	기타	소계	혼인 귀화	기타 사유	소계	외국 인 부모	외-한국인 부모	한국 인 부모
합계	50,734,284	2.8%	1,409,577	1,117,481	588,944	144,214	87,221	135,020	162,082	123,513	76,473	47,040	168,583	10,451	146,071	12,061
서울	10,249,679	4%	406,293	341,121	150,433	31,217	29,063	61,901	68,507	39,164	17,380	21,784	26,008	4,114	20,461	1,433
부산	3,550,963	1.4%	49,329	38,147	16,460	6,498	6,275	3,031	5,883	3,807	3,165	642	7,375	148	6,770	457
대구	2,507,271	1.2%	31,231	23,683	11,288	4,241	3,068	1,669	3,417	2,423	2,024	399	5,125	168	4,598	359
인천	2,801,274	2.6%	73,588	56,209	30,620	8,202	2,117	5,992	9,278	7,827	4,850	2,977	9,552	717	8,141	694
광주	1,463,464	1.4%	20,649	15,099	6,333	2,966	3,094	993	1,713	1,624	1,410	214	3,926	58	3,620	248
대전	1,515,603	1.5%	22,499	16,888	3,992	3,359	5,413	1,841	2,283	1,764	1,398	366	3,847	136	3,340	371
울산	1,135,494	2.2%	25,163	19,647	11,457	2,627	573	1,226	3,764	1,934	1,507	427	3,582	128	3,123	331
경기	11,937,415	3.6%	424,946	344,406	209,784	38,953	10,392	41,959	43,318	38,175	22,327	15,848	42,365	3,663	35,447	3,255
강원	1,536,448	1.5%	22,731	14,685	5,584	3,837	2,321	1,353	1,590	2,266	1,990	276	5,780	80	5,333	367
충북	1,562,903	2.4%	37,653	28,302	15,734	4,511	3,278	2,572	2,207	2,906	2,286	620	6,445	211	5,670	564
충남	2,101,284	3.2%	67,157	52,199	30,442	7,413	6,380	4,108	3,856	4,935	3,676	1,259	10,023	356	9,019	648
전북	1,874,031	1.9%	35,281	23,212	9,444	5,765	4,124	1,361	2,518	3,303	2,883	420	8,766	97	8,123	546
전남	1,914,339	2%	39,006	24,886	12,934	6,758	2,097	1,089	2,008	3,357	3,010	347	10,763	148	9,811	804
경북	2,699,195	2.1%	56,250	42,041	23,873	7,109	5,725	2,057	3,277	3,958	3,530	428	10,251	150	9,360	741
경남	3,308,765	2.6%	87,395	69,323	46,847	9,133	2,375	3,363	7,605	5,310	4,504	806	12,762	244	11,478	1,040
제주	576,156	1.8%	10,406	7,633	3,719	1,625	926	505	858	760	533	227	2,013	33	1,777	203

주: 외국인주민 자녀는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임

- 외국인주민 자녀 중 '한국인부모'는 한국인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자녀임

자료 : 안전행정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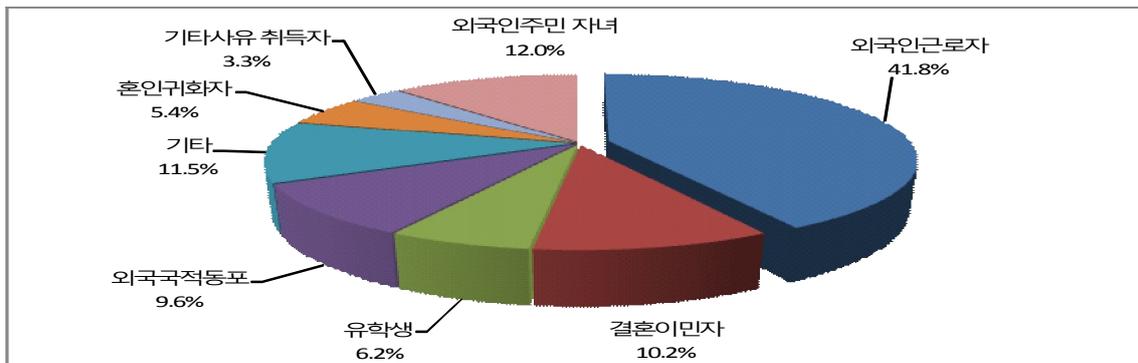
<표 2-24> 외국인 주민의 국적별 현황(2012)

(단위 : 명)

구분	합계	동북아						동남아						남부 아	중앙 아	미국	러시 아	기타
		소계	중국	중국 (한국계 중국)	대만	일본	몽골	소계	베트남	필리 핀	태국	인도 네시 아	기타					
합계	1,409,577	869,518	211,458	570,158	24,915	38,560	24,427	312,590	162,254	59,735	28,733	30,394	31,474	62,862	32,919	68,648	8,743	54,297
한국국적 미취득자	1,117,481	674,034	147,301	462,268	21,424	21,763	21,278	230,053	110,564	38,378	25,981	29,645	25,485	60,013	29,637	66,887	6,976	49,881
외국인 근로자	588,944	331,402	22,992	295,604	155	1,604	11,047	159,208	64,407	26,855	22,518	27,914	17,514	45,915	22,965	13,796	2,483	13,175
결혼이민 자	144,214	78,136	34,906	29,184	514	11,145	2,387	53,681	37,302	8,292	2,593	506	4,988	2,405	2,508	2,408	1,315	3,761
유학생	87,221	72,001	62,289	2,205	568	2,059	4,880	6,173	3,027	522	401	609	1,614	2,902	1,057	919	495	3,674
외국국적 동포	135,020	73,550	0	72,870	43	637	0	132	0	12	4	72	44	10	1,929	40,421	978	18,000
기타	162,082	118,945	27,114	62,405	20,144	6,318	2,964	10,859	5,828	2,697	465	544	1,325	8,781	1,178	9,343	1,705	11,271
한국국적 취득자	123,513	102,655	30,926	68,612	1,876	560	681	17,286	10,452	5,537	325	125	847	825	491	339	628	1,289
혼인귀화 자	76,473	58,527	19,764	37,226	801	230	506	16,389	10,083	5,134	268	103	801	650	392	9	170	336
기타사유 취득자	47,040	44,128	11,162	31,386	1,075	330	175	897	369	403	57	22	46	175	99	330	458	953
외국계주민 자녀	168,583	92,829	33,231	39,278	1,615	16,237	2,468	65,251	41,238	15,820	2,427	624	5,142	2,024	2,791	1,422	1,139	3,127
외국인부 모	10,451	8,995	2,726	5,925	97	197	50	979	516	369	43	4	47	225	37	49	34	132
외국인- 한국인부 모	146,071	78,045	27,451	31,087	1,488	15,842	2,177	58,952	37,215	14,375	2,180	587	4,595	1,477	2,497	1,261	980	2,859
한국인부 모	12,061	5,789	3,054	2,266	30	198	241	5,320	3,507	1,076	204	33	500	322	257	112	125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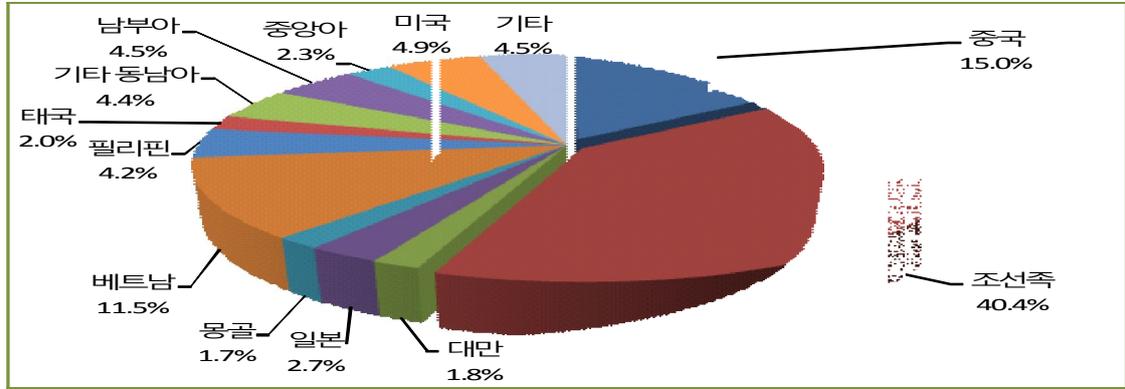
자료 : 안전행정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보도자료.

<그림 2-3>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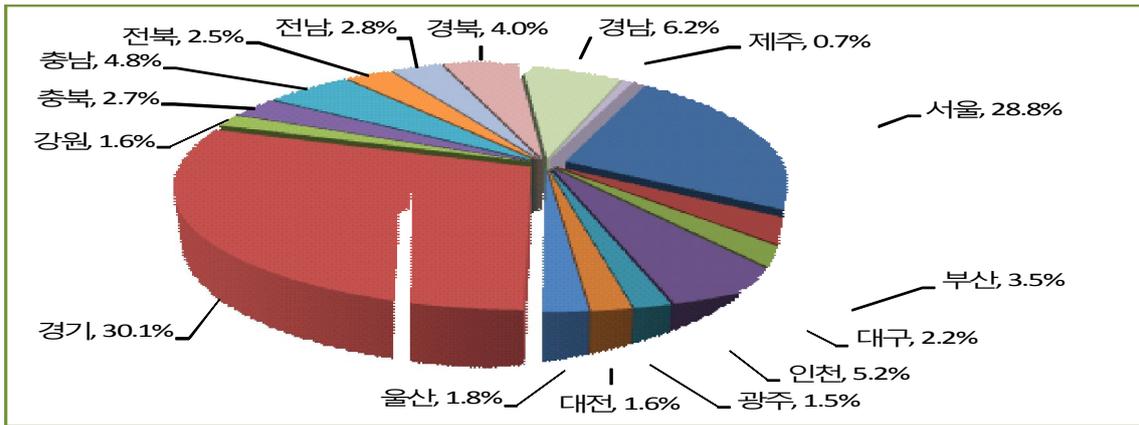
자료 : 안전행정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보도자료.

<그림 2-4> 국적별 분포(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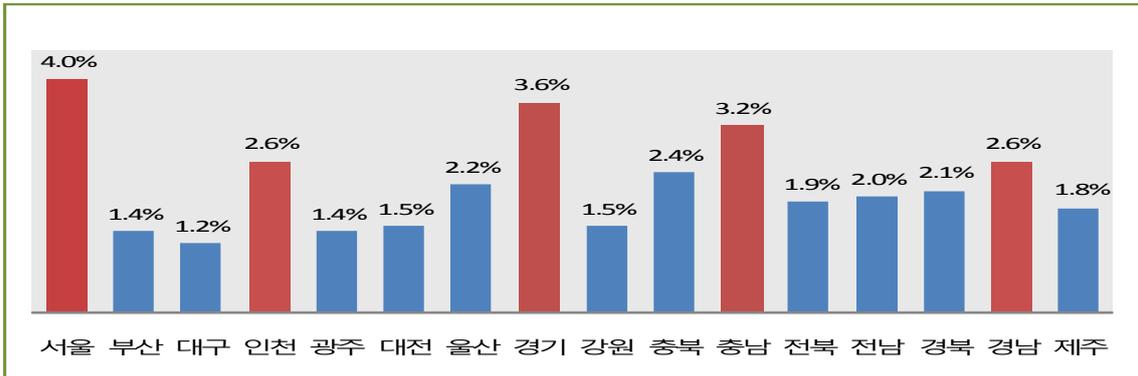
자료 : 안전행정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보도자료.

<그림 2-5> 시도별 분포(2012)



자료 : 안전행정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보도자료.

<그림 2-6> 시도별 비율(%)(2012)



자료 : 안전행정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보도자료.

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체류 외국인통계는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통계로 여기에는 크게 조사통계와 행정통계가 있다.

가. 고용허가제 원자료

고용허가제 원자료는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외국국적동포(H-2)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관련 정보가 누적되는 체계이다. 고용허가제 원자료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인적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성, 출생년월, 국적, 혼인여부, 학력수준 등)가 입력되어 있는 관계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구학적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원 자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별로 DB가 생성되고 있다. 사업장 관련 자료는 사용자가 내국인구인노력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는 고용허가서발급관련 자료와 구인신청 후 알선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정보가 대표적이다. 외국인근로자는 구직신청시 제출하는 외국인근로자 개인정보와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업종, 직종, 지역, 임금 등)를 확인할 수 있다.

구인·구직신청 및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마스터별 주된 변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25> 외국인기본정보 마스터의 주요 변수

COLUMN	COLUMN_COMMENT	COLUMN	COLUMN_COMMENT
EMPL_PERM_ACQ_DT	고용허가취득일자	LEAVE_DT	출국일
EMPL_PERM_LOST_DT	고용허가상실일자	VISIT_CAPACITY_CD	체류자격코드
COMP_MNG_NO	사업장관리번호	FORE_REG_NO	외국인등록번호
FORE_NAME	영문이름	PASSPORT_NO	여권번호
FORE_NATIONALITY_CD	국가코드	PASSPORT_END_DT	여권만료일
FORE_BIRTH	생년월일	CAPACITY_CNTR_CD1	자격면허부여국가1
FORE_SEX	성별	CAPACITY_PART1	자격면허계열1
FORE_AGES	연령	CAPACITY_NM1	자격면허명칭1
FORE_MARITAL_CD	혼인여부	CAPACITY_CNTR_CD2	자격면허부여국가2
FORE_SOCIAL_NO	신분증번호	CAPACITY_PART2	자격면허계열2
FORE_HEIGHT	신장	CAPACITY_NM2	자격면허명칭2
FORE_WEIGHT	몸무게	CAPACITY_CNTR_CD3	자격면허부여국가3
FORE_EYE_L	시력_좌	CAPACITY_PART3	자격면허계열3
FORE_EYE_R	시력_우	CAPACITY_NM3	자격면허명칭3
FORE_COLOR_BLIND	색맹여부	LANG_LEVEL_KOR	언어능력_한국어
FORE_HADDR_NM	본국주소	LANG_LEVEL_ENG	언어능력_영어
FORE_HPHONE	본국전화번호	LANG_LEVEL_ETC_CD	언어능력_기타언어
FORE_ADDR_ZIP_CD	국내우편번호	LANG_LEVEL_ETC	언어능력_기타
FORE_ADDR_NM	국내주소	KOR_LANG_KIND	한국어시험종류
FORE_ADDR_ETC_NM	국내기타주소	KOR_LANG_MARKS	한국어시험점수
FORE_PHONE	국내전화번호	EMPL_PERM_NO	고용허가서번호
FORE_HAND_PHONE	휴대폰번호	SELF_LEAVE_YN	자진출국자여부
SCHOL_CNTR_CD	학력국가	KOR_EDUC_ORG	한국어교육기관
LAST_COURSE_CD	학력종류	KOR_EDUC_DT_START	한국어교육_시작
SCHOL_NM	학교명	KOR_EDUC_DT_END	한국어교육_종료
MAJOR_CNTR_CD	전공국가	BUILD_CAPACITY_YN	건설업자격증유무
MAJOR_KIND	전공계열	KOR_TEST_READING	한국어능력시험읽기점수
MAJOR_NM	전공명	KOR_TEST_LISTENING	한국어능력시험듣기점수
FORE_GUBUN	외국인구분	KOR_TEST_TOTAL	한국어능력시험총점수
VISA_LEAV_NO	사증발급인정서발급번호	KOR_TEST_AVERAGE	한국어능력시험평균점수
VISA_LEAV_DT	사증발급인정서발급일	KOR_TEST_CENTER	한국어능력시험기관
ENTRY_DT	입국일	KOR_TEST_DT	한국어능력시험날짜

<표 2-26>은 외국인기본정보로 이 정보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자가 구직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한국의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성되는 정보이다. 이들 정보

는 구직신청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추출되며 주요 정보는 개별 근로자의 인적특성(성, 연령, 국적, 학력 등)과 한국어시험,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능력정도 등이다.

다음으로 사업장 기본정보 마스터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쳤음에도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할 때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발급신청을 하고 적격한 경우 발급되는 고용허가서와 구인신청서를 기초로 형성된다. 사업장 기본정보에는 사업장 특성을 알 수 있는 업종, 상시근로자수, 임금수준, 4대사회보험 제공여부 등의 기본정보가 있다.

<표 2-26> 사업장 기본정보 마스터의 주요 변수

COLUMN	COLUMN_COMMENT	COLUMN	COLUMN_COMMENT
COMP_MNG_NO	사업장관리번호	EMPL_INSUR_JOIN_YN	고용보험가입유무
COMP_GUBUN	사업자구분	INDUS_INSUR_JOIN_YN	산재보험가입유무
COMP_REG_NO	사업자등록번호	HEAL_INSUR_JOIN_YN	건강보험가입유무
COMP_NM	사업장명	MAIN_COMP_GUBUN	주된사업장구분
ZIP_CD	우편번호	MAIN_COMP_MNG_NO	주된사업장관리번호
ADDR_NM	주소	MAIN_COMP_REG_NO	주된사업장_사업자등록번호
PHONE	전화번호	TOT_COMP_CNT	총사업장수
FAX_NO	팩스번호	TOT_NATL_LABR_CNT	총상시내국인근로자수
EMAIL	이메일	TOT_FORE_LABR_CNT	총상시외국인근로자수
EMPL_INSUR_IND_CD	고용보험_업종	INDUSTRYM_CD	세부업종
INDUSTRY_CD	업종	QUOTA_INDUSTRY_CD	쿼터업종
TOT_LABR_CNT	상시근로자수	SUM_TOT_LABR_CNT	총상시근로자수
NATL_LABR_CNT	상시내국인근로자수	INSERT_MODE	등록방법
FORE_LABR_CNT	상시외국인근로자수	SJ_BKIND_CD	산재보험_업종
NATL_MONTH_AMT	내국인월임금	SJ_BKIND_NM	산재보험_업종명
FORE_MONTH_AMT	외국인월임금	PENS_INSUR_JOIN_YN	국민연금 가입여부
WORK_CONTENTS	사업내용	EMPL_INSUR_NO	고용보험 관리번호

나.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고용동향

고용허가제 동향을 통해 매월 업종별, 국가별 외국인력의 취업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고용관리 및 외국인력 수급계획(업종별 쿼터 결정 등) 및 기타 각종 외국인력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이며 조사기간은 작성대상기간이 작성 대상 월1일~말일이며 작성기준시점은 작성대상월 익월 5일~10일이다. 조사 방법은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상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허가제에 의한 월별, 업종별, 국가별 취업인원을 조사하고 있다.

<표 2-27>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국가별 도입자수 (단위: 명)

국가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베트남	704	8,619	5,712	11,507	19,707	13,497	9,328
필리핀	832	5,308	8,434	5,928	6,289	9,282	3,165
태국	558	5,964	6,746	5,798	9,287	9,957	2,977
몽골	500	4,433	4,703	2,642	4,775	4,032	2,157
인니	359	4,361	1,215	4,343	12,304	4,981	4,383
스리랑카	214	2,974	2,166	2,194	7,163	4,244	4,498
중국	0	0	0	403	1,833	4,281	708
우즈베키스탄	0	0	0	275	4,492	2,779	4,045
파키스탄	0	0	0	365	2,355	1,628	1,014
캄보디아	0	0	0	198	2,793	2,524	2,297
네팔	0	0	0	34	2,014	2,445	2,264
미얀마	0	0	0	0	67	2,037	218
키르기스스탄	0	0	0	0	451	181	313
방글라데시	0	0	0	0	1,494	1,361	2,750
티모르	0	0	0	0	0	94	340

<표 2-28>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업종별 도입자 수 (단위: 명)

업종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3,167	31,659	28,976	33,687	75,024	63,323	40,457
제조업	3,124	31,115	28,182	30,181	65,871	55,351	33,545
건설업	0	84	42	740	3,326	4,296	2,498
농축산업	43	419	700	2,298	4,482	2,324	3,153
서비스업	0	41	52	48	48	54	53
어업	0	0	0	420	1,297	1,298	1,208

<표 2-29> 외국인근로자 보험급여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수급자	금액
총계	4,963	67,732	5,876	79,086	7,464	102,320	8,147	106,302	8,705	108,942	10,142	127,934
방글라데시	175	2,338	147	1,705	122	1,515	119	1,399	139	1,463	166	1,716
중국	2,052	37,573	2,243	38,216	1,845	33,510	4,809	72,215	5,295	73,173	6,453	87,266
가나	9	153	5	151	3	14	1	8	2	6	3	58
인도	33	483	22	253	16	278	30	264	16	170	7	146
인도네시아	326	3,093	287	2,715	269	2,939	346	4,203	342	4,183	317	3,346
이란	18	88	14	193	7	91	5	176	2	13	4	24
일본	4	40	5	88	5	54	11	74	7	20	7	154
말레이시아	-	-	0	0	1	1	4	10	1	49	1	44
몽골	230	2,503	284	3,107	294	3,131	277	3,278	246	2,127	214	2,474
모로코	2	34	2	41	2	79	2	2	0	0	1	2
미얀마	28	344	38	540	34	334	24	380	39	518	41	393
네팔	81	876	62	651	57	521	96	1,238	119	1,249	171	1,735
나이지리아	11	110	2	24	8	115	13	137	7	135	6	141
파키스탄	202	1,802	208	2,029	176	1,845	215	1,973	227	2,119	237	2,015
페루	4	48	2	48	2	10	1	4	0	0	-	-
필리핀	276	2,498	342	3,283	311	3,129	269	2,249	232	2,188	248	2,599
러시아	49	738	37	539	18	279	9	83	25	413	33	521
스리랑카	228	2,319	253	2,600	280	2,501	379	3,538	383	4,062	423	4,564
대만	16	105	16	104	9	80	39	277	33	242	1	70
태국	248	2,193	299	2,528	323	3,033	302	2,845	260	2,809	236	2,862
우즈베키스탄	158	1,719	172	1,981	198	2,323	249	2,853	268	2,996	368	4,601
베트남	499	5,040	628	6,413	662	6,113	797	7,843	866	8,812	919	9,666
기타	314	3,635	808	11,876	2,822	40,426	150	1,430	196	2,196	285	3,537

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통계

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동 조사는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충원되지 않는 빈 일자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족인력 규모를 조사하여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입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A),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을 제외한 전 산업이 조사범위이다. 단, 국·

공립 교육기관 등 공무원 재직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 층화계통추출방법에 의해 추출된 표본사업체의 상용·기타·외국인 근로자가 조사대상이다. 2010년 상반기 조사의 경우 31,582개 사업체가 조사대상 표본사업체이다.

조사항목은 7개 영역에 걸쳐 총 21개 항목을 조사하며 7개 영역별 조사항목은 <표 2-30>과 같다. 조사항목의 조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원은 조사기준일 현재의 상용·기타·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부족인원은 조사기준일 현재 채용여부나 채용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의 가동,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이다. 채용계획인원은 조사 기준일로 부터 9개월(상반기는 4월1일 ~12월 31일, 하반기는 10월 1일~익년도 6월 30일) 이내에 채용할 계획이 있는 인원이며 구인인원은 조사기준기간 중에 대외적인 구인활동을 한 인원으로 동 기간 내에 채용합격자가 최종확정 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 모집공고시에 공표한 모집인원으로 산정된다. 채용인원은 조사기준기간 내에 구인인원 중 채용하기로 확정했거나 채용된 인원을 의미하며 미충원인원 구인인원에서 채용인원을 제한 인원을, 미충원사유는 내국인에 대한 미충원인원이 있는 경우 미충원 된 사유이다.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은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상반기는 1월 1일~3월 31일, 하반기는 7월 1일~9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 2-30>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영역별 조사항목

영역	조사항목
사업체 현황	①사업체 명칭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사업체 소재지 ④경영형태 ⑤사업형태 ⑥ 주요생산품명/영업종목
근로자 현황	①총근로자 수 ②내국인(상용/기타) ③외국인
현원,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①현원(계, 내국인<상용/기타>, 외국인) ②부족인원(계, 내국인<상용/기타>, 외국인) ③채용계획인원(계, 내국인<상용/기타>, 외국인 직종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①구인인원(내국인<상용/기타>, 외국인) ②채용인원(내국인<상용/기타>, 외국인) ③미충원인원 내국인(미충원 사유<1순위/2순위>)
구인경로	①내국인 구인 시 경로 방법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노력	①인력부족해소를 위한 노력(주로 활용하는 것 3가지)

<표 2-31>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Layout

ID	Column Name	Comments
1	RESEARCH_PK	Key 값
2	KUMO	규모
3	LABORER_TOTAL	총근로자수 계
4	LABORER_MAN	총근로자수 남자
5	LABORER_WOMAN	총근로자수 여자
6	REGULAR_TOTAL	상용근로자 계
7	REGULAR_MAN	상용근로자 남자
8	REGULAR_WOMAN	상용근로자 여자
9	ETC_TOTAL	기타 계
10	ETC_MAN	기타 남자
11	ETC_WOMAN	기타 여자
12	FOREIGNER_TOTAL	외국인 계
13	FOREIGNER_MAN	외국인 남자
14	FOREIGNER_WOMAN	외국인 여자
15	OCCUPATION_LEVEL	수준
16	TYPE_DUTY	'A' 구인인원, 'B' 채용인원, 'C' 미충원인원, 'D' 현원, 'E' 부족인원, 'F' 채용계획인원, 'G' 채용계획인원 - 훈련, 'H' 부족인원 - 훈련
17	TYPE_NATIONALITY	국적 - 'D' 내국인, 'F' 외국인
18	TYPE_WORKER	R' 상용, 'N' 기타, 'C' 훈련직종코드
19	NUMBER_PERSON	인원
20	TRAINING_CODE	훈련직종코드
21	REASON_VACANCY_1	미충원사유 1
22	REASON_VACANCY_2	미충원사유 2
23	EST_WGT_F	가중값
24	CITY	시도
25	INDUSTRY	산업분류(중분류)
26	JOB	직종(소분류)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업종, 직종, 사업장규모, 숙련수준별 고용인원 및 부족인원이다. 고용인원 및 부족인원은 성, 내외국인, 상용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2-32> 현원,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단위 : 천명, %, %p)

구분	현원					부족인원					인력부족률				
	총원	내국인			외국인	총원	내국인			외국인	전체	내국인			외국인
		상용	기타				상용	기타				상용	기타		
'12.2/2	9,009 [2.6]	8,789 [2.7]	8,243 [3.4]	546 [-7.4]	221 [-0.2]	267 [-1.6]	248 [-2.9]	227 [-3.8]	22 [7.4]	19 [20.4]	2.9 (-0.1)	2.7 (-0.2)	2.7 (-0.2)	3.8 -0.5	7.9 -1.3
'12.1/2	9,124	8,911	8,083	829	213	280	262	234	28	18	3.0	2.9	2.8	3.2	8.0
'11.2/2	8,780	8,559	7,970	589	221	272	256	236	20	16	3.0	2.9	2.9	3.3	6.6

주: 인력부족률= [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 ×100,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고용노동부, 2012년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표 2-33>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단위 : 명, %)

구분	구인인원					채용인원				
	총원	내국인			외국인	총원	내국인			외국인
		상용	기타				상용	기타		
'12.2/2	585,871 [0.0]	566,476 [0.6]	439,859 [-1.1]	126,616 [7.0]	19,395 [-14.9]	491,860 [6.7]	476,737 [7.1]	358,254 [6.3]	118,484 [9.4]	15,123 [-5.5]
'12.1/2	580,804	560,996	457,629	103,367	19,808	492,753	476,672	380,218	96,454	16,081
'11.2/2	585,832	563,044	444,668	118,376	22,789	461,181	445,174	336,912	108,262	16,007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2012년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표 2-34> 미충원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 명, %, %p)

구분	미충원인원					미충원율				
	총원	내국인			외국인	총원	내국인			외국인
		상용	기타				상용	기타		
'12.2/2	94,011 [-24.6]	89,739 [-23.9]	81,605 [-24.3]	8,132 [-19.6]	4,272 [-37.0]	16 (-5.3)	15.8 (-5.1)	18.6 (-5.6)	6.4 (-2.1)	22 (-7.8)
'12.1/2	88,051	84,324	77,411	6,913	3,727	15.2	15	16.9	6.7	18.8
'11.2/2	124,651	117,870	107,756	10,114	6,782	21.3	20.9	24.2	8.5	29.8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자료: 고용노동부, 2012년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동 조사는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노동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37,000개 표본사업체이다. 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며 조시기준은 6월 급여계산기간이고 조사항목은 다음의 <표 2-35>와 같다.

<표 2-3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조사항목(사업체 조사)

영역	조사항목
A. 사업체 전반에 관한 사항	1. 사업체 명칭 2. 사업체 소재지 3. 주요 생산품명 또는 사업내용 4. 사업체 형태 5. 경영형태 6. 전체근로자수 6-1. 장애인근로자수 6-2. 외국인근로자수 7. 노동조합 유무 8. 6월 급여계산기간 9. 산재보험 가입여부 10. 주당 정상조업·영업일수 11.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 12. 전년(2008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B. 사업체 인력 현황	13.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수 및 추출근로자수 14. 장애인근로자 총근로시간 및 임금총액 15. 외국인근로자 총근로시간 및 임금총액

5.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통계

외국인 유학생통계는 대학 알리미 통계시스템을 통해 공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별*과정별*전공별*국적별 외국 유학생 수를 확인 할 수 있다.

교육부의 유학생 기준은 현재 재학중인 모든 외국인 유학생 전체를 유학생으로 간주하여 집계하며, 이에 외국 외교관 자녀 등을 유학생으로 포함하여 집계하여, 비자기준의 법무부 통계와 차이가 존재한다.

<표 2-36>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인 유학생⁶⁾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재적 학생수	3,480,058	3,475,245	3,564,805	3,636,063	3,691,334
외국인학생수	31,933	40,309	50,525	59,975	63,578
외국인 학생비율(%)	0.9	1.2	1.4	1.6	11.7

주 : 외국인학생 비율 = 외국인 재적학생수/총 재적학생수×100

법무부의 유학생 통계는 법무부가 집계하여 발표하는 출입국자 현황, 체류외국인 현황,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법무부와 교육부 간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 통계는 집계시점 및 집계기준 차이가 존재하며 양자 간 유사·중복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부의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집계 기준을 D-2(유학)비자, D-4(어학연수)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기준으로 집계하나, 교육부는 현재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유학생(예. 외국 외교관 자녀 등)으로 간주하고 집계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 외 외국인 유학생 체류관리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보시스템>(http://fims.hikorea.go.kr/isi/index.html, 법무부. 2008. 8~)이 존재하는

6) 매년 4. 1. 당시 국내 고등교육단계의 학위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등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

데, 이 시스템을 통하여 외국인 정보를 통합·관리하나, 관련통계는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다.

6. 경찰청 외국인 범죄 통계

경찰청 범죄통계는 범죄추세 파악 및 중요국책인 형사정책 및 사회 치안정책 수립을 위해 작성되고 있으며, 2007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조사대상은 발생 사건 피해자 및 검거사건 피의자이며 조사기간은 1년이며 이는 행정보고 통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

<표 2-37> 최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단위 :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6,144	9,103	9,042	12,657	14,524	20,623	23,344	22,543	26,915
(전년대비증감,%)	17.7	48.2	-0.7	40.0	14.8	42.0	11.6	-3.4	19.4
살인	32	60	42	72	54	85	103	83	103
강도	137	157	124	107	118	133	260	221	157
강간	49	92	94	120	176	178	198	255	308
절도	630	825	821	971	1,213	1,343	2,001	1,741	1,766
폭력	2,071	2,424	1,919	2,483	3,369	4,940	5,322	5,885	7,830
지능범	834	1,965	3,340	6,229	5,685	7,472	4,792	4,487	3,549
마약류	120	218	152	73	231	694	778	720	243
기타	2,222	3,362	2,550	2,602	3,678	5,778	9,890	9,151	12,959

제 2 절 소결: 외국인 통계의 주요 개념적 범주의 차이

앞의 제1절에서는 각 정부부처에서 산정 및 발표하고 있는 외국인 통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제1절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통계작성

의 목적에 따라 개념적 범주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표 2-38> 부처별 통계 현황(종합)

자료산출기관	산출자료	주요 항목	비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통계월보	출입국현황, 외국인체류관리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국적 및 난민업무 처리현황, 외국적 동포 현황	
	출입국통계분기보	출입국자현황, 체류외국인현황, 외국인근로자현황, 유학생현황, 결혼이민자현황, 국적 및 난민 현황, 출입국항별 현황, 기타 현황	
	출입국통계연보	출입국자 통계, 체류외국인 통계, 결혼이민자통계, 국적통계, 외국국적동포통계, 난민통계, 불법체류통계출입국사범통계	원자료를 통해 이러한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
통계청	국제인구이동통계	내외국인 국제이동/국적별 외국인 구제이동(총이동, 입국자, 출국자, 순이동)	90일 이상 체류자
	인구동향조사	외국인, 귀화자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자에 대한 정보	
	외국인고용조사	외국인의 경제활동실태에 대한 정보 취업, 실업, 고용률, 임금, 학력 등	등록외국인기준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통계	지방자치단체별 거주 외국인주민의 국적, 성, 유형별 현황, 세대수 등 한국국적 취득자에 대한 정보도 수록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원자료	고용허가제의 인적특성(성, 출생년월, 국적, 혼인여부, 학력수준), 사업장 정보(업종, 직종, 지역, 월임금 등)	행정정보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외국인근로자 현황, 부족인원, 부족률, 채용계획인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조사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외국인근로자 총근로시간 및 임금총액	조사자료
교육부	외국인유학생통계	학교별, 과정별, 전공별, 국적별 외국 유학생수	
경찰청	외국인범죄통계	범죄유형별 외국인범죄 현황	

첫째, 외국인력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통계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자통계이다.

부가적으로 안전행정부의 외국인 주민현황통계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통계가 있다. 이는 통계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통계청은 조사통계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행정통계와는 차이가 있으며 취업자격 외국인현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제비교 통계로는 출입국자통계가 타당하나 경제활동상태의 관점에서 보면 통계청의 자료가 유용하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통계는 지역별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들 통계는 작성시기 및 작성방법에 따라 외국인력규모가 차이가 난다. 다만 안정행정부의 외국인력 범주와 출입국통계연보의 범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협의를 통해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제2장 참조)

둘째, 유학생 통계도 출입국자통계와 교육부 통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또한 조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 출입국자통계는 유학생 비자로 접근하고 있는데 비해, 교육부는 재학중인 유학생통계로 집계하며 여기에는 유학비자 외에 가족동반 등의 비자로 입국하여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 대상의 범위가 다른데 기인한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 통계는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정책대상 자료로서의 결혼이민자에는 국적미취득자와 국적취득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외국인 정보에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나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집계자료에는 국적취득여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출입국자통계나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넷째, 현재의 우리나라 통계는 주로 외국인에 초점을 맞춘 통계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국적취득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있고, 영주권을 신청한 동포도 증가하는 등 체류자격의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의 집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주자라는 관점에서 OECD에서 구분하고 있는 체류자격 유형별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이민정책 수립에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시적 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현황, 준 영구적 체류자 통계, 국적취득자의 통계를 정립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민자 통계는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활용자의 이해를 돕고 정확한 통계의 활용을 위해서는 메타 데이터(meta data)를 산출하여 통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 기관에서 산출하고 있는 각종 이주자 통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의 목적 및 수집방법, 자료의 특성에 대해 메타 데이터를 작성하여 이 통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출입국자통계의 국제 기준: UN의 권고안과 OECD 기준을 중심으로

제 1 절 들어가는 말

본 장에서는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국제 기준으로서 UN과 OECD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국제 기준 중 UN의 권고안은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국제이주 통계의 작성을 권장한 것으로서 국제이주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인구통계학적인 관점에 그치고 있고 국제이주정책의 목적의식이 약한 편이다. 반면에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은 국제이주 유입국인 OECD 회원국들을 주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주 정책의 주된 관심사인 영구적 이주와 한시적 이주 등으로 구분하고 이주자의 범주를 중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본 연구에서는 UN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하고,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 비교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2 절에서는 UN의 국제이주 통계 권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 3 절에서 OECD의 국제이주 통계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서 OECD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주요 선진국에 대한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의 적용 방식을 소개한 다음 OECD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 정리되어 있는 통계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4 절에서 본 장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UN의 국제이주 통계 권고안

UN의 국제이주 통계 권고안은 1994년에 작성된 「Recommendations on Statis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Revision 1」에 기록되어 있다. UN에서는 1953년과 1976년에도 국제이주에 관한 권고안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1994년의 권고안은 종전의 권고안들에 대한 수정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UN은 국제이주 통계의 산출과 관련해서 국제이주에 관한 결정권은 각 국가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어떤 유형의 이주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조건 속에 받아들일 것인가 등에 관한 통제권은 해당 국가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먼저 출입국자 통계의 표준화를 위해서 체류자격분류나 비자체계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체류자격분류체계나 비자체계는 각 국가의 이주정책의 실행에 핵심적인 해당 국가의 고유한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통계 목적을 위해서 그것까지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또한 표준적인 출입국자통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출입국 규제방식이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UN의 국제이주 권고안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이주에 대한 개념 규정이다. 1994년 권고안에서는 그것이 ‘자신의 통상적 거주국 또는 상주국(his or her country of usual residence)을 변경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주국은 그 사람이 사는 곳, 즉 자신이 보통 일상생활을 하는 곳을 말한다⁷⁾. 따라서 유흥, 휴가, 사업, 질병 치료, 종교적 순례 등을 위한 일시적인 여행은 상주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이주의 범주에 포함

7) 1976년 권고안에서는 실제로 그리고 의도된 체류기간(actual and intended periods of presence in a country)을 중심으로 이주를 정의하고 있는데, 1994년 권고안에서는 상주(usual residence)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되지 않는다. 복수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조만간 종전의 거주지로 복귀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는 곳을 자신의 거주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등처럼 모호한 영역이 존재하기도 한다. UN 권고안은 이처럼 언급된 체류의 시간제한에 대해서는 상주국을 결정하는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 이주로 규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요건과 관해서는 UN의 국제 여행통계 권고안⁸⁾을 감안해서 1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UN 권고안은 체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제이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1년 미만 동안 상주국을 변경하면서 여행목적이 아닌 단기적 국제 이동도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1년 미만이면서 3개월 이상의 상주국 변경을 단기적 이주로 규정하고, 1년 이상의 상주국 변경을 장기적 이주로 명명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UN의 권고안에 따른 국제 이주 유형은 장기적 이주, 단기적 이주 등 2 가지 유형이고, 그 밖에 국제이주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 이동을 제외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UN 권고안에서는 경유자 범주(이웃 나라로 매일 또는 매주 일하러 가는 국경근로자(border workers), 최종 목적지가 다른 나라인 경유자 등), 국제 여행 범주(여행객, 사업상 방문객, 친지 방문, 질병 치료 목적상 방문, 종교적 순례 등), 전통적인 제외 집단(공무상의 방문자와 동반 가족, 주둔군과 동반 가족 및 피용자, 유목민(nomad))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유학과 훈련, 노동이주, 국제 조직에서의 근무, 자유이동권한을 가진 사람의 이동, 정착(settlement)을 위한 국제 이동, 가족 형성 또는 직계 친족과의 결합을 위한 국제 이동, 난민과 비호 추구(asylum-seeking),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 등은 이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상의 구분법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진국보다는 통계적 수준이 낮은 저개발국가에 더 유용한 경향이 있다

8) UN의 여행통계 권고안에서는 국제 방문객(international visitor)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방문목적이 방문국 내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활동 외의 것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박성일, 2012).

이상에서 살펴본 UN의 권고안은 개념적으로 비교적 간명하지만, 국제 비교가 가능한 출입국자통계로 산출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에 직면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들로 제시된 것이 통계의 소스와 거주 기간의 측정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통계의 소스가 나라별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국제이주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통계 소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UN의 권고안이 주목하고 있는 통계의 소스로는 주민(외국인)등록 정보, 다른 행정정보, 출입국관리 정보, 가구조사 등이다. 이들 통계 소스에 따라서 출입국 정보의 질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상의 통계 소스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주민(외국인)등록 정보와 출입국관리 정보 등의 장단점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민(외국인)등록 정보는 외국인에 대해 등록과 해지 절차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 체류기간을 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특정 기간 이내의 일시적 출국인 경우 등록해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정 때문에 등록해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는 한계들이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 주민(외국인)등록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역내 이동으로 인해서 출입국관리 정보에 한계가 발생하는 유럽국가들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정보와 외국인등록 정보 등 2가지 소스를 모두 가지고 있다.

출입국 관리는 행정적 정보(여권, 비자, 거주 허가 등)와 기타 통계목적 정보(의도하는 체류기간, 출발국 등) 등을 수집하게 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요청할 수 없고 입국자가 기입한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비교적 낮아서 국제 이주의 유량을 측정하는데 적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 관리 정보

를 통해서 국제이주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이 통상적 거주 의 변경을 의미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제 이주 통계의 산출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체류기간의 측정 방식에 있다. UN의 권고안에서 국제 이주의 유형화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거주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실제 체류기간을 측정하는 방법이겠지만, 위에서 살펴본 정보 소스 문제 등과 얽혀서 실제 체류기간을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정 때문에 UN의 권고안은 의도하는 체류기간, 비자 만료 또는 체류허용기간, 실제 체류 기간 등을 모두 인정하고, 그 밖에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거주 주택의 임대나 매입 또는 거주지 설립 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 중 의도하는 체류기간이나 비자 만료 또는 체류허용기간 등은 출입국관리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실제 체류기간은 외국인등록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1년 기준의 실제 체류기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차(time-lag)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UN 권고안은 이상의 접근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지만, 사용한 측정방식을 반드시 각주로 처리하여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 3 절 OECD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

1. OECD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

OECD에서 국제이주 통계의 기준을 만들어 공표한 것은 2006년 판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서부터이다. 이 판에서는 UN 권고안과 동일하게 장기 이주(long-term migration)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그 뒤에 영구적/준영구적 이주(permanent or permanent-type migration)라는 개

념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OECD 국제이주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용어 변경의 주된 이유는 UN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과 혼동될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그 용어의 실제적 의미는 장기 이주의 개념에 가깝다는 설명도 부연되었다.

OECD가 UN의 권고안과 다른 국제이주 통계 기준을 마련한 주된 이유는 체류기간 1년 규정이 이주 정책의 주된 관심사항인 이주자의 성격을 규정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Fron et al, 2008). 그 배경에는 나라마다 이주자의 개념 규정에 사용하는 기준으로서 체류기간이 서로 다르고, 그 차이점들이 각국의 행정통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들도 있고, 스웨덴이나 핀란드, 프랑스 등처럼 1년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도 있으며,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처럼 이민국가들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만을 이주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심지어 1주일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⁹⁾. 이렇게 국가별로 각각 다른 이주정책의 산물로서 서로 다른 이주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체류기간을 이주의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주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OECD에서는 각 나라별로 이주정책 목적상 장기 이주로 설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기 이주로 설정하고 있는가를 이주 규정의 일차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구적/준영구적 이주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OECD는 국제 이주의 범주를 영구적/준영구적 이주(permanent or permanent-type migration), 한시적 이주(temporary migration), 제외 집단(excluded)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제외 집단은 UN의 권고안과 동일

9) 각 나라들이 국제 이주의 개념 규정에서 동일한 체류기간으로 바꿀 수 없는 이유는 그 체류기간이 인구학적 용도뿐 아니라 정책이나 행정 예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국가통계는 2차적 사용자에게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정책적 용도가 다른데 동일한 이주 범주에 대해서 동일한 거주기간을 부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 등록을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주자수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의 조정은 지역간 이해관계의 대립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Lemaitre, 2005).

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웃 나라로 매일 또는 매주 일하러 가는 국경근로자(border workers), 최종 목적지가 다른 나라인 경유자, 여행객, 사업상 방문객, 친지 방문, 질병 치료 목적상 방문, 종교적 순례, 공무상의 방문자와 동반 가족, 주둔군과 동반 가족 및 피용자, 유목민(nomad) 등이 바로 그 집단에 속한다. 이들 제외 집단을 논의로 하면 이주의 주된 범주는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와 한시적 이주 등 2 가지만 남게 된다.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것의 정보원을 주민(외국인)등록과 출입국관리 기록물 등 각국이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UN의 권고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주민등록체계를 이용하는 나라들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이고, 거주허가체계를 이용하는 나라들은 프랑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이다.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체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체류기간을 넘지 않는 외국인 입국자들은 통계에서 빠지게 되고, 또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 기준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장단기 체류기간을 구분하지 않기도 한다.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체계를 이용하는 나라들에서도 거주허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통계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각국마다 서로 다른 정보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ECD는 각국이 가지고 있는 이들 정보원을 존중하면서 국제이주 통계 작성의 기준을 도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입국 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의 범주를 통계화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의 변화(status change)를 감안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정 비자 유형에 대해서 영구적/준영구적 이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판단하는 범주적 접근법이다. 후자의 접근법에서는 특정 거주허가가 갱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대해서는 영구적/준영구적 이주로 구분하고 있다. Lemaitre(2005)에 따르면, 전자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데이터 정리방식만을 변경하면 되는 방식으로서 인구학적 회계의 니즈를 충족해주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후자는 이주정책의 주된 관심사인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규제 과정을 추적하는 접근법으로서 국제 이주의 성격과 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어쨌든 OECD는 그 중 후자를 주된 접근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체류기간을 사용하는 회원국들의 접근법도 존중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한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의 개념 규정은 다음과 같다(Fron et al, 2008). 영구적/준영구적 이주가 포함하는 이주 범주들은 (1) 입국 시 영주권을 받은 사람, (2) 한시적 거주허가를 받았지만 그것이 다소간 계속 갱신이 가능한 사람, (3) 자유 이동권을 가진 사람(가령, EU 회원국 내의 EU 시민권자들) 등이다. 반면에 영구적/준영구적 이주가 포함하지 않는 집단은 (1) 여행 목적이든 사업목적이든 상주국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일시적 방문자(가령, 여행객, 사업상 방문자, 선원 등), (2) 갱신될 수 없거나 제한된 수준에서만 갱신될 수 있는 한시적 거주허가를 받은 사람(계절적 근로자, 유학생, 교환교수 및 교환연구자, 수련생 등), (3) 자유 이동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시적 거주허가를 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이유로 입국한 사람 등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영구적/준영구적 이주는 영주권을 가지고 입국하였거나 장기 체류기간 허가(가령, 5년이나 10년)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permanent entries)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OECD국에서 입국 시 영주권을 주는 경우는 예외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시적 거주허가를 가지고 입국한 후 준영구적 이주(permanent-type status)로 변경한 경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OECD 영구적/준영구적 이주 개념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준영구적 이주 개념이라고 할 수 있

기 때문에 준영구적 이주의 세부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준영구적 이주는 결국 입국 후 체류자격의 변화(change in status)가 발생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 즉, 그것은 외국인들이 유입국에서 정상적으로 영주로 이어지는 이주자 트랙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령, 프랑스에서처럼 입국 시 1 년의 거주허가를 받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 갱신될 수 있어서 사실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결국 유입국(receiving country)이 해당 이주자를 영구적인 이주와 한시적인 이주 중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정책적 의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아래에 몇 가지 특수한 경우들에 대한 준영구적 이주의 판단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비호 또는 난민신청자: 신청의 결과 장기 체류가 허용된 경우에는 준영구적 이주로 분류되지만,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준영구적 이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 불법 체류자: 불법 입국자나 비자 기간을 넘어서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준영구적 이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불법체류자들은 준영구적 이주로 분류되지 않는다(물론 합법화가 이루어져서 영주권을 받게 된 다음에는 그 범주로 구분된다). 반면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온건한 방식의 합법화(rolling or soft regularizations)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들을 준영구적 이주자로 분류된다.
-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귀국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장기체류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준영구적 이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OECD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은 두 가지 이주 유형들에 대해서 이주의 목적을 기준으로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먼저 영구적/준영구적 이주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5 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1) 고용 관련 이주, (2) 고용 이주자의 동반 가족, (3) 가족 재결합과 형성을 위한 이주, (4) 인도주의적 이주와 동반 가족, (5) 기타(해외 동포 이주, 은퇴자, 자립적 재산가의 이주자 등). 한시적 이주에 대해서는 유학생, 훈련생, 관광취업(working holiday makers), 계절적 노동자, 주재원(intra-company transfers), 기타 한시적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의 적용 방식: 주요국 사례

이상의 논의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OECD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도 UN의 권고안과 동일하게 국제이주 통계의 집계 과정에 관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지, 각 회원국의 비자·체류자격의 분류체계에 대한 표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자·체류자격의 분류체계는 각 회원국의 고유한 주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이주 정책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고 그만큼 국가별 차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OECD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의 적용방식이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영구적/준영구적 이주를 중심으로 주요 회원국들에 대한 OECD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의 적용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내용들은 Fron et al(2008)을 참조하고 해당 국가들의 온라인 정보들을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 미국

OECD는 전통적으로 이민국가인 미국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부여받은 이주자만을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비자유형보다 영주권 부여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주통계연보(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에 영주권자에 관

한 통계를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OECD는 그 통계를 그대로 끌어다 사용하고 있다. 그 중 고용 기반 이주는 고용에 기반을 둔 모든 영주권자를 포괄하고, 고용 이주자의 동반 가족은 영주권을 받은 고용기반 이주자의 동반 가족으로 측정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이주는 비호와 난민 및 기타 제한없는 비호신청자 등과 그들의 동반가족으로 측정하고 있다.

○ 독일

2005년 1월 1일 이민법을 개정한 이후 영구적/준영구적 이주 통계의 새로운 산출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 가령, 고용 기반 이주의 경우 그 이전에는 과학자, 전문직과 경영간부, 간호원, 예술가 등처럼 세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5년 이후에는 노동허가가 주어진 자로서 12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고용 기반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실제 체류기간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외국인등록체계로부터 산출되고 있다. 가족 이주는 가족재결합 비자 보유자로 구성되어 있고, 인도주의적 이주와 동반가족은 인정된 비호신청자, 소련으로부터 탈출한 유대인 정착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직 이민국가로 규정하기에는 약한 독일의 경우에는 고용기반 이주의 경우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의 기준으로서 체류기간 1년이 중요한 커트라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EU 국적자들의 이동은 1년 이상 체류하는 EU 국적자들의 유입량을 고려하여 추정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독특하게도 출입국자통계를 표본 추출된 일부 입국자에 대한 조사(International Passenger Survey: IPS)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설문조사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할 의도인지를 묻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출입국자통계의 기본 소스가 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 방문객으로의 전환자(visitor switchers)나 이주자로의 전환자(migrant switchers) 등은 보

정되고 있다. 이 설문조사 자료는 학생, 관광취업, 비호신청자 등을 제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과 부합될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자료에서는 비호 신청자를 장기이주자로 구분할 가능성이 있는데,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에서는 그들이 인정되었을 때만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로 포함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그 밖에 이 자료에서는 이주 목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OECD는 영국의 국제이주 통계를 IPS를 기본으로 하고 출입국관리 통계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영구적/준영구적 이주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보완적 자료를 통해서 다른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체류자격이 전환된 사람들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정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것은 설문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통계는 추정치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고용 기반 이주자들로는 종교 목회자, 12개월 이상의 고용, 다른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고용허가를 받은(first permissions) 외국인, 허가가 필요없는 고용의 위한 영주권 부여자, 고용을 위한 EU 시민권자, 고숙련 이주 프로그램 참여자 등이다. 그 밖에 고용 기반 이주자의 동반 가족, 가족 재결합 및 형성을 위한 이주, 인도주의적 이주 등은 다른 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한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다. 고용허가는 스웨덴 내의 특정 기업에 의한 고용을 전제로 해서 부여되는데, 최장 2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스웨덴에 대한 OECD 국제이주 통계는 정부가 제공하는 거주허가 통계표에서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먼저 고용기반 이주는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거주 허가를 받은 자, EU국으로부터 온 사람으로서 거주 허

가를 받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북유럽국가들(Nordic Countries)로부터 온 근로자들 등으로 구성되고, 가족 이주는 친족에게 부여되는 거주 허가, EU국으로부터 온 자의 동반가족, 입양자녀에게 부여된 거주 허가 등이고, 북유럽국가들로부터 온 가족은 추정치로 산입되고 있다. 그 밖에 인도주의적 이주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 일본

일본의 경우에는 비자와 그 체류기간 사이에 명확한 조응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자가 장기적인 것이고 어떤 비자가 단기적인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한계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유량과 저량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장기 이주 여부를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유입량과 유출량이 동일하다는 가정(stationarity condition) 속에 저량을 유량으로 나눈 값이 평균 체류기간에 대한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평균 체류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에는 장기 이주자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 이주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장기 이주자로 투자가/사업 경영자, 엔지니어, 인문학/국제서비스 전문가, 숙련 근로자 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으로부터 고용 비자로 전환된 사람들도 고용기반 이주로 포함하고 있다. 가족 이주로는 일본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영주권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반 가족 범주로 장단기 이주자의 동반 가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 일부만을 추정하여 가족 이주에 포함되었다. 인도주의적 이주는 승인된 집단, 인도적 체류 허용자, 인도차이나 난민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 절의 논의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에 대한 국제 이주 통계 산출 방식은 OECD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3. OECD의 국제이주 통계

OECD 국제이주 통계는 2006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과 OECD Migration Databases, 그리고 OECD.StatExtracts (<http://stat.oecd.org>) 등에 보고되고 있지만, 그 통계들은 결국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 집약되어 있다. OECD Migration Databases는 인터넷상에서 OECD 회원국들(러시아연방 포함)의 국제이주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들과 일치한다. 참고로 OECD Migration Databases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들은 해당 국가들에서 사용하는 이주 통계를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거나 조정되지 않은(not standardized nor harmonized) 것들이라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OECD 회원국들의 출입국에 관한 세부 정보를 담고 있는 OECD.StatExtracts도 사실상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 보고되고 있는 통계들을 출신국별로 세분화해서 작성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의 통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 정리된 통계들이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을 중심으로 국제 비교성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위의 3 가지 종류의 OECD 국제이주 통계는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의 출입국 행정통계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각 회원국들의 정책적 사정 때문에 분류방식이 회원국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그만큼 OECD 국제이주 통계의 국제 비교성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OECD 국제이주 통계는 표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

고 있으며, 그 대신 조정(harmonization)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단기 이주자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전제 하에서 현재는 장기 이주를 중심으로 통계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어쨌든 OECD 국제이주 통계는 지금도 여전히 진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한계 속에서도나마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OECD 국제이주 통계에 투입되는 원시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원시 정보는 OECD가 조직 운영하고 있는 국제이주에 관한 전문가그룹(OECD Expert Group on Migration)의 국가별 통실향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가.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통계

OECD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은 몇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이주 통계와 관련해서는 국제 이주 추이를 다루고 있는 1장(Part I)이 가장 중요한 장이고, 그 다음으로 국가별 노트를 다루고 있는 마지막 장(2012년판의 경우 Part IV) 정도가 참고할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2012년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Part I에 보고되는 통계들은 영구적 이주(Permanent Migration), 한시적 이주 및 비호신청, 이주자 유량(flow)의 지역별 성별 분포, 국적 취득과 이주 인구 등의 절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절별로 정리되어 있는 통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 통계들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출신국과 비자 등으로 구분된 국제이주에 관한 기초 정보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통계 포털에 공시된 자료)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있다.

(1) 영구적 이주

- 영구적 이주자의 유입량(inflow)과 변화율: 영구적 이주자는 OECD 국제 이주 통계 기준상의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를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적 취득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인만을 포함하고, 체류 중도에 비자갱신을 통해서 체류자격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변화율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과 3년 전 대비 변화율 등 2 가지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표 3-1> 영구적 이주자 관련 통계표 예시: 2012년 판

국가	연도(표준화된 통계: 명)							변화율(%)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9-10	07-10
미국									
영국									
한국									
총계									

- 전 인구 대비 영구적 이주자 유입량 비율: 영구적 이주자 유입량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도표로 작성되어 있다.
- 신규 근로연령 인구 대비 영구적 이주자 유입량 비율: 근로연령 인구(15-59세)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 대비 영구적 이주자 유입량의 백분율이 국가별로 구분해서 도표로 정리되어 있다.
- 이탈 근로연령 인구 대비 영구적 이주자 유입량 비율: 근로연령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고령층(55-64세) 대비 영구적 이주자 유입량의 백분율을 정리하고, 그것을 근로연령 고령층(55-59세 대비 내국인 근로연령 청년층(15-19세)의 백분율과 비교하고 있다.
- 영구적 이주자 유입량의 이주목적 범주별 분포: 영구적 이주자 유입량을 근로 이주, 자유이동, 근로이주의 동반가족, 가족(결혼) 이주, 인도주의적 이주, 기타 이주 등 이주목적 범주별로 세분하여 정리하고 있다(도표로 작성).

(2) 한시적 이주자 및 비호신청

- 한시적 노동 이주(temporary worker migration) 유입량: 이 통계는 유입량과 유입량의 변화율 등으로 국가별로 구분해서 정리되어 있는데, 최근 6개년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동시에 보고하고 있다.

<표 3-2> 한시적 이주자 관련 통계표 예시: 2012년 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변화율 (09-10)
미국							
영국							
한국							
총계							

- 유학생 통계: 유학생 통계는 유학생 인원수와 변화율, OECD 회원국 출신 유학생 비율, 전체 학생 대비 비율 등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유학생 통계의 출처가 OECD Education Database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 통계보다는 교육부 통계와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표 3-3> 유학생 관련 통계표 예시: 2012년 판

	유학생 정의	2009	평균 증가율 (04-09)	증가율 (08-09)	OECD국 출신 % (2004)	OECD국 출신% (2009)	대학생 대비 (%)
미국							
영국							
한국							
총계							

주: 유학생 정의는 비영주권 학생(non-resident students)과 외국인(foreign students)으로 구분됨

- 비호신청자: 비호 신청자 인원수 유입량과 2000년 이후의 저량, 전체 인

구 대비 비율, 2000년 대비 변화, 2009년 대비 변화율 등이 국가별로 정리되어 있다.

(3) 이주자 유량(flow)의 지역별 성별 분포

- OECD회원국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출신국별 분포: 주요 25개 송출국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다.
- 이주자 유입량의 성별 분포가 국가별로 정리되어 있다.

(4) 국적 취득과 이주 인구

-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과 전체 인구 대비 외국 출생 인구¹⁰⁾ 비율(%)이 국가별로 도표화되어 있다. 그와 함께 인구 증가율(2000년 대비)에서 순 이주량¹¹⁾과 자연증가율 등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정리되어 있다.
- 국적 취득자: 2000-2010년 사이의 국적취득자수와 그것의 전체 국민 대비 비율이 국가별로 구분해서 도표화되어 있다.
- 고학력 외국 출생 인구(high-educated foreign-born population)의 비중: 외국출생 인구 중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학력¹²⁾ 취득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가별로 정리하고 있다.

10) 외국출생인구(foreign-born population)는 외국인(foreign population)과 약간 다른 개념이다. Lemaitre et al(2006)에 따르면, 외국출생인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수에서 국적취득자를 더하고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수를 뺀 값이다.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인구센서스 등에서 출생지역을 조사하는 것이지만, 특정 시점의 외국출생인구 통계가 존재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의 순이주자와 국적취득자, 국내 출생 외국인수 등의 정보를 알면 그 값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외국인수에 국적취득자를 더하고 내국 출생 외국인을 빼면 외국출생인구를 구할 수 있다. 외국인수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의 접근법이 더 용이한 산식이다.

11) 순이주량(net migration)은 입국하는 이주자에서 출국하는 이주자를 뺀 값이다. 여기서 이주자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12) OECD 통계에서 고학력(tertiary education)은 이론적인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대학교 뿐 아니라 전문대학처럼 2년 이상의 이수기간이 요구되는 실제적, 기술적, 직업적 훈련을 받는 것도 포함한다.

<표 3-4> 국가별 섹션 통계표 예시: 2012년 판

이주 유량(외국인) 1000인 당	2000	2005	2009	2010	평균		수준 (천명)
					01-05	06-10	
유입량							
유출량							
범주별 영구이주 유 입량(외국인)	1000명		분포(%)		최상위 10개의 송출국 (전체 이주자 중 비율)		
	2009	2010	2009	2010			
고용							
가족(동반가족포함)							
인도주의적							
자유이동							
기타							
전체							
범주별 한시적 이주 유입량	2005	2009	2010	평 균 (06-10)			
유학생							
연수생							
관광취업자							
계절적 근로자							
주재원							
기타 한시근로자							
비호신청자 유입량	2000	2005	2009	2010	평균		수준
					01-05	06-10	2010
인구증가의 구성	2000	2005	2009	2010	01-05	06-10	2010
자연증가							
순 이주							
이주자 저량 (전인구 대비 비율)	2000	2005	2009	2010	01-05	06-10	2010
외국출생 인구 외국인							
국적 취득자 (전인구 대비 비율)	2000	2005	2009	2010	01-05	06-10	2010
노동시장 성과	2000	2005	2009	2010	01-05	06-10	
인구 대비 고용률							
내국 출생 남성							
내국 출생 여성							
외국 출생 남성							
외국 출생 여성							
실업률							
내국 출생 남성							
내국 출생 여성							
외국 출생 남성							
외국 출생 여성							

Part IV의 국가별 노트에 보고되어 있는 통계들로는 국제이주자 유출입량, 국제이주 유입자들의 범주별 분포(근로, 가족(동반가족 포함), 자유 이동, 인도주의적 이주자, 기타 등), 한시적 이주자(유학생, 수련생, 관광취업자, 계절적 노동자, 주재원, 기타 등), 비호신청자, 순 이주량과 인구 증가 대비 비율, 이주자 저장(stock), 외국 출생 인구와 외국인수, 국적 취득자, 노동시장 성과(해당 범주의 전체 인구 대비 고용률과 실업률) 등이 있다. 이들 통계들 관련된 통계표들을 2012년판을 원용해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통계결과들을 보면, 그 통계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은 영구적 이주자(inflow) 대 한시적 이주자, 이주목적 범주(근로 이주, 자유이동, 근로자의 동반가족, 가족(결혼) 이주, 인도주의적 이주, 기타) 등이다. 위의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개념들은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나. OECD Migration Databases와 OECD.StatExtracts 통계

먼저 OECD 국제이주 전문가그룹(OECD Expert Group on Migration)의 통신원에게 요구되는 메가데이터의 변수들과 통계표들은 다음과 같다.

- 국적별 외국인구 유입량(inflow of foreign population by nationality): 외국인구 유입량을 국적별로 정리하고 있다. 이 원시자료는 여성 이주자에 대해서 동일한 포맷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 분포도 정리하고 있는 셈이다.

<표 3-5> 국적별 외국인구 유입량 원시자료 통계표 예시: 2012년 보고용 예시

송출국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 국적별 외국인구 유출량(outflow of foreign population by nationality): 외국인구 유출량을 국적별 성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유입량 포맷과 동일하기 때문에 관련 통계표는 예시하지 않고자 한다.
- 출생국별 외국출생 인구의 저량(stock): 외국 출생 인구를 출생국별 성별로 정리하고 있다. 표의 포맷은 국적별 외국인구 유입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시하지 않고자 한다.
- 국적별 외국인구 저량: 외국인구 저량을 국적별 성별로 정리하고 있다. 이 표의 포맷도 국적별 외국인구 유입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시하지 않고자 한다.
- 이전 국적별 외국인 국적취득자(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country of former nationality): 국적 취득자를 종전 국적별 성별로 정리하고 있다. 이 표의 포맷도 국적별 외국인구 유입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시하지 않고자 한다.
-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량(Inflows of foreign workers by nationality):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량을 국적별 성별로 정리하고 있다. 이 표의 포맷도 국적별 외국인구 유입량과 동일하다.
- 국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유입량(Inflows of seasonal foreign workers by nationality):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유입량을 국적별 성별로 정리하고 있다. 이 표의 포맷도 국적별 외국인구 유입량과 동일하다.

- 유학생의 체류자격 변경(Status changes of international students): 유학생의 체류자격이 고용, 가족, 기타 이주 등의 변경된 인원수를 정리하고 있다.

<표 3-6> 유학생 체류자격 변경 원시자료 통계표 예시: 2012년 보고용 예시

송출국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고용	가족	기타

제 4 절 소결

이상으로 본 장은 UN의 권고안과 OECD 기준을 중심으로 출입국자통계에 관한 국제 기준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UN의 권고안이나 OECD 기준은 모두 개별 국가의 행정통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행정통계가 각 국가들의 이주정책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국가간 이주통계의 표준화 정도가 낮은 상태에 있다.

둘째, UN의 권고안이나 OECD 기준 모두 각국의 행정통계가 기본적으로 각국의 이주정책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행정통계를 변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 결과 UN의 권고안이나 OECD 기준 모두 출입국자통계 자료의 수집보다 집계방식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셋째, 동일한 맥락에서 UN의 권고안이나 OECD 기준 모두 출입국자통계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 체류자격이나 비자의 분류체계의 표준화를 시도하

지도 않고 또 그에 대한 표준적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에게 체류자격이나 비자의 분류체계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출입국자 통계 2008년 정기 통계품질진단』(진기남·천새롬 저, 2008)이 제기한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 필요성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체류자격이나 비자의 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접근법보다 출입국자통계의 집계방식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넷째, UN의 권고안이나 OECD 기준 모두 출입국자통계의 소스로서 주민(외국인)등록체계, 출입국관리 행정통계, 기타 행정 통계, 설문조사 등을 고려하면서, 그 중 어느 정보원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OECD의 경우에는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출입국관리 행정통계의 비중을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점과, 출입국관리 행정통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민(외국인)등록체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 소스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UN 권고안은 이주자를 상주국을 변경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상주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국을 바꾸지 않는 입국자 유형들, 즉, 이웃 나라로 매일 또는 매주 일하러 가는 국경근로자(border workers), 최종 목적지가 다른 나라인 경유자, 여행객, 사업상 방문객, 친지 방문, 질병 치료 목적상 방문, 종교적 순례 등과 전통적인 제외 집단들인 공무상의 방문자와 동반 가족, 주둔군과 동반 가족 및 피용자, 유목민(nomad) 등은 이주자로 보지 않고 있다. OECD 기준에서도 이들 집단은 이주자 유형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섯째, UN 권고안은 이주자를 장기 이주자와 단기 이주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 구분의 기준선은 거주기간 1년이다. 따라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장기 이주자, 그 미만 거주하는 외국인은 단기 이주자로 분류된다. 한편 UN 권고안은 1년의 거주기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주기간, 의도

하는 거주기간, 거주 허용기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일곱째, UN의 권고안과 달리 OECD 기준은 이주자를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와 한시적 이주자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는 (1) 입국 시 영주권을 받은 사람, (2) 한시적 거주허가를 받았지만 그것이 다소간 계속 갱신이 가능한 사람, (3) 자유 이동권을 가진 사람(가령, EU 회원국 내의 EU 시민권자들) 등이고, 한시적 이주자는 (1) 갱신될 수 없거나 제한된 수준에서만 갱신될 수 있는 한시적 거주허가를 받은 사람(계절적 근로자, 유학생, 교환교수 및 교환연구자, 수련생 등), (3) 자유 이동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시적 거주허가를 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이유로 입국한 사람 등이다. OECD 기준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유학생이나 연수생에 대해서는 모두 한시적 이주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OECD의 이주자 구분 기준은 각 회원국의 이주정책이나 이주자 상황에 따라서 다소간 달리 적용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가령, 이민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만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로 분류되는 반면에 독일이나 스웨덴, 영국 등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고용 이주자들도 반복 갱신이 가능하다면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제 4 장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에 관한 평가와 개선방안

제 1 절 들어가는 말

본 장은 출입국자통계에 대한 UN 권고안과 OECD 기준을 준거틀로 사용해서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장에서 이미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국제비교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출입국자통계와 OECD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 정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 등이다.

그 중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자통계는 국내 정책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제비교성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출입국자통계를 국제비교성 기준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소한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의 통계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국제비교성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자통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것 또한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자통계가 국제비교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 목적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자통계를 변경하기보다는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통계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해서 추가될 필요가 있는 통계들은 OECD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 정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분석에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장의

분석은 OECD가 작성한 우리나라 통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 장은 먼저 OECD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 정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OECD가 작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에 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어서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자통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장의 나머지 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 절에서는 OECD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 정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에서 누락된 항목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3 절에서는 OECD가 자신의 국제이주 기준을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에 적용하는 과정과 방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4 절에서는 UN 권고안과 OECD 기준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자통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절에 본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OECD 누락통계의 현황과 개선 방안

1. 누락 현황

OECD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는 각국의 이민자 통계를 수집 정리한 보고서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의 항목을 대상으로 각국의 통계를 정리하고 있는 만큼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비교항목으로는 외국인 인구의 유입 및 유출, 난민신청자의 유입, 외국인 및 외국태생의 국적취득자의 현황, 국적취득 현황, 외국인력의 유입현황, 외국인 및 외국태생 이민자의 고용현

항 등이다(이 통계들의 목록은 제3장에 상술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통계들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OECD에 제출하고 있다. 관련 정보들은 법무부의 출입국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 정리되어 있는 국제인구이동 통계, 그 밖에 고용노동부 등에 산재해 있는 행정통계 등이 제공되고 있다.

먼저 법무부의 출입국통계연보와 고용노동부 중에서는 신규 이주자(유입, 유출)의 수, 외국인 거주자의 수, 체류 목적별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의 수,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비전문직 근로자 저량과 송출국별 분포, 방문취업제 근로자수와 송출국별 분포, 유학생, 결혼이민자 수, 난민신청자수와 승인율, 불법체류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자료로는 국제인구이동에 관한 원시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OECD에서 요구하는 원시정보들은 국적별 외국인구 유입량, 국적별 외국인구 유출량, 출생국별 외국출생인구의 저량, 국적별 외국인구 저량, 국적별 외국인 국적취득자,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량, 국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량, 유학생의 체류자격 변경 등이다(이들 변수들의 포맷에 관해서는 제3장에 상술되어 있음). OECD가 우리나라 국제이주통계를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 정리되어 있는 국제인구이동 원시자료이고 나머지는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국제인구이동 원시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OECD가 요구하는 국제인구이동 원시자료 중에서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가 대응하지 못하는 누락 정보들은 다음과 같다.

- 출신국별 외국출생 인구의 저량(stock)
- 이전 국적별 외국인 국적취득자(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country of former nationality)
-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량(Inflows of foreign workers by

nationality)

- 국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유입량(Inflows of seasonal foreign workers by nationality)
- 유학생의 지위 변경(Status changes of international students)

이들 원시자료 정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섹션에서 순 이주자가 인구 증가율에서 차지하는 비율, 외국 출생 인구에 관한 통계항목들이 누락되어 있다.

그 밖에 고학력 외국 출생 인구(high-educated foreign-born population)의 비중이 누락되어 있고, 한시적 이주자 범주의 하나인 주재원에 관한 통계가 최근에 누락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 통계들(이주자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관한 통계들)이 누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 이동 이주자나 계절적 노동자 등에 대한 통계도 누락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2. 개선 방안

이 누락정보들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자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보이다. 이주자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보는 이주자의 유형으로는 외국인과 국적취득한 이주자 두 유형이 있으며, 경제활동상태의 정보는 고용, 실업 및 이민자의 고용률 등과 같은 변수 등이다. 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보는 통계청에서 2012년부터 실시한 외국인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 유형별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실업률이나 고용률과 같은 지표의 산출도 가능하다(제2장 참조). 그러나 외국태생 한국국적 취득자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보는 현재로서는 산출되지 않고 있다. 이 통계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경제

활동실태조사와 외국인고용조사 두 통계를 통해 자료를 산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있는데 전자의 경우 매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가중치 문제 등 기존 조사결과의 일관성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통계는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에서 등록외국인 외에 외국국적 태생의 국내 국적취득자를 포함하여 경제활동상태를 추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새로운 통계 산출이 필요)

둘째, 고학력 외국 출생 인구(high-educated foreign-born population)의 비중: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 학력 취득자의 비율이다. 이 통계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과 외국출신의 국적취득자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학력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통계에는 국적 취득자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국내 국적취득자의 학력을 파악할 수는 없다. 이 통계는 법무부의 국적처리 행정통계 작성시 학력수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국적취득자가 국적취득 후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청소년들의 경우 학력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첫째에서 제시한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에서 외국태생의 국민들을 포함하면 해결이 가능하다(새로운 통계 산출이 필요).

셋째, 영주 이주자 유입량의 인구 증가 대비 비율이다. 이 통계는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서 발표하고 있다(2장 참조) 안전행 정부는 외국인(등록외국인)과 국적취득자의 유형별로 거주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나 지자체 인구대비 비중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 증가율을 통해 영주 이주자 유입량(FLOW)의 추계가 가능하다(기존 공표된 자료를 통해 산정이 가능).

넷째, 외국 출생 인구이다. 이 또한 셋째에서 언급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조사에서 발표되고 있다(기존 발표된 통계자료에서

확인 가능).

다섯째, 출생국별 외국출생 인구의 저량(stock)이다. 이 통계 또한 안정행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에서 발표되고 있다(제2장 참조) (기존 발표된 통계자료에서 확인 가능).

여섯째, 이전 국적별 외국인 국적취득자(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country of former nationality)이다. 이 통계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연보의 국적처리 현황의 국가 및 취득유형별 자료에서 공표되고 있다(기존 발표된 통계자료에서 확인 가능).

일곱째,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량(Inflows of foreign workers by nationality)이다. 이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하는 출입국통계연보의 입국자 현황에서 비자유형별 국적별 입국자수를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를 이용하여 취업자격 비자를 대상으로 국적별 외국인근로자의 유입현황 통계에 대한 작성이 가능하다(기존 발표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이 가능).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범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여덟째, 국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유입량(Inflows of seasonal foreign workers by nationality)통계는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홉째, 유학생의 지위 변경(Status changes of international students)통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내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공표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통계작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자료의 공표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다.

제 3 절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에 대한 OECD 기준 적용 현황

UN의 권고안은 적용이 비교적 간명하지만, 그이 준거해서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를 작성해오지는 않았다. 박성일(2012)에 따르면, UN 사무국 경제사

회국 인구분과는 이주자 저량과 유량을 10년 단위로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고 UN통계국이 국제이주에 관한 국가별 공식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최근에는 그것마저 중단된 상태이다. 반면에 OECD 국제이주 통계의 경우에는 OECD가 매년 주도적으로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를 작성해서 발표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의 적용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OECD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 보고된 우리나라 국제이주 통계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되고 있다. OECD 국제이주 최고 담당자와의 이메일 교신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 등의 비율이 높아서 비자제도가 허용하는 체류기간 한도와 실제 체류기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각 비자별 평균 체류기간을 추정하고, 그 추정치가 5년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 준영구적 이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한 통계적 기법은 저량(stock)을 유입량(inflow)으로 나눈 값이다. 그 중 저량은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사람들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공식이 평균 체류기간의 산정 방식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stationarity 가정, 즉 저량상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이 요구되고 있다. 가령, 유입량(inflow)이 뒤로 갈수록 증가하게 되면 추정 체류기간은 줄어들게 되면, 반대로 유입량(inflow)이 뒤로 갈수록 감소하게 되면 추정 체류기간은 증가하게 된다. 어쨌든 이전에 이 공식을 이용하여 평균 체류기간을 산정해보면, 기술연수(D-3), 주재(D-7), 기업투자(D-8), 영주(F-5), 방문취업(H-2) 등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1>에 2010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한 비자유형별 평균 체류기간을 보면,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영주(F-5), 결혼이민(F-6) 등뿐만 아니라 주재(D-7), 기업투자(D-8), 전문직업(E-5),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에서도 높은 체류기간이 추정되고 있다.

<표 4-1> OECD의 우리나라 비자 유형별 체류기간 추정: 2010년 자료

	전체 (A)	불법 체류자 (B)	차이 (C=A-B)	B/A	신규 입국자 (D)	체류 기간 (C/D)
사증면제(B-1)	32365	14569	17796	45%	7515	2.37
관광·통과(B-2)	71490	13954	57536	20%	25681	2.24
단기상용(C-2)	26795	21365	5430	80%	2752	1.97
단기방문(C-3)	64150	34646	29504	54%	44145	0.67
단기취업(C-4)	712	246	466	35%	153	3.05
유학(D-2)	69600	4586	65014	7%	16764	3.88
기술연수(D-3)	5350	3489	1861	65%	2005	0.93
일반연수(D-4)	37809	4167	33642	11%	11849	2.84
종교(D-6)	1571	55	1516	4%	535	2.83
주재(D-7)	1530	27	1503	2%	97	15.49
기업투자(D-8)	7557	658	6899	9%	873	7.90
무역경영(D-9)	4477	27	4450	1%	922	4.83
교수(E-1)	2266	5	2261	0%	530	4.27
회화지도(E-2)	23317	95	23222	0%	12436	1.87
연구(E-3)	2324	13	2311	1%	692	3.34
기술지도(E-4)	233	3	230	1%	63	3.65
전문직업(E-5)	594	22	572	4%	107	5.35
예술홍행(E-6)	4162	1437	2725	35%	2549	1.07
특정활동(E-7)	10712	925	9787	9%	3397	2.88
비전문취업(E-9)	220319	42773	177546	19%	34862	5.09
선원취업(E-10)	6716	1622	5094	24%	2942	1.73
방문동거(F-1)	42212	6572	35640	16%	8410	4.24
거주(F-2)	138669	10315	128354	7%	21648	5.93
동반(F-3)	15409	413	14996	3%	3229	4.64
영주(F-5)	84912	745	84167	1%	15529	5.42
결혼이민(F-6)	45475	0	45475	0%	1192	38.15
방문취업(H-2)	286586	3924	282662	1%	70963	3.98
기타	54103	1862	52241	3%	87	600.47
합	1261415	168515	1092900	13%	293070	3.73

출처: OECD 국제이주 담당부서와의 이메일 교신을 통해서 얻음. OECD가 보낸 메일에는 2009-10년 자료들을 이용해서 추산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2010년 자료만 이용하여 추산함

이상의 방식을 참조하여 OECD가 우리나라의 비자별 이주유형을 구분한 결과가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이 자료는 2013년판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서 사용한 기준인데, OECD의 국제이주 담당자와의

이메일 교신을 통해서 입수한 것이다. 이 기준들 중 2012년판까지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이 준영구적 이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3년판에는 한시적 이주로 수정되어 있다. OECD 담당자들이 이들 기준들 중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게 생각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1) 무역경영(D-9): 제도적으로는 한시적인 체류허가를 얻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면 평균 체류기간이 5년 정도로 나오고 있다.
-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예술홍행(E-6): 한시적 이주인지 준영구적 이주인지 확실하지 않다.
- (3) 방문동거(F-1): 그 중 일부는 <한시적 근로자 - 기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더 낫겠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자(F-1-4)는 E-9로 전환될 수 있는 해외동포들인데, 숫자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 (4) 동반(F-3): 영구적 이주인지 한시적 이주인지는 배우자의 비자 유형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 이주로 분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들이 비자를 변경하면 영구적 이주로 구분할 수 있다.
- (5) 영주(F-5): 이 집단이 다른 영구적 이주 비자로부터 넘어온 사람들이라면, 이 집단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들이 한시적 비자 유형으로부터 넘어온 것이라면, 그 근거들을 유형화해야 한다.
- (6) 현재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 전환된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표 4-2> OECD의 우리나라 비자별 이주 유형 구분

비자	표준 범주	하위 범주	OECD의 코멘트
외교(A-1)	제외		
공무(A-2)	제외		
협정(A-3)	제외		
사증면제(B-1)	제외		
관광·통과(B-2)	제외		
일시취재(C-1)	제외		
단기방문(C-3)	제외		3개월 미만이어서 제외에 포함
단기취업(C-4)	제외		
문화예술(D-1)	제외		
유학(D-2)	한시적	유학생	
기술연수(D-3)	한시적	수련생	
일반연수(D-4)	한시적	유학생	
취재(D-5)	제외		
종교(D-6)	한시적	기타	
주재(D-7)	한시적	기업 내 파견	
기업투자(D-8)	준영구적	고용	
무역경영(D-9)	한시적	한시적 근로	통계적으로는 5년 이상 체류로 추정
구직(D-10)	한시적	한시적 근로	
교수(E-1)	준영구적	고용	불확실(한시적, 영구적)
회화지도(E-2)	준영구적	고용	불확실(한시적, 영구적)
연구(E-3)	준영구적	고용	불확실(한시적, 영구적)
기술지도(E-4)	준영구적	고용	불확실(한시적, 영구적)
전문직업(E-5)	준영구적	고용	
예술홍행(E-6)	한시적	한시적 근로	불확실(한시적, 영구적)
특정활동(E-7)	준영구적	고용	
비전문취업(E-9)	한시적	한시적 근로	
선원취업(E-10)	제외		
방문동거(F-1)	준영구적	가족	주부(F-1-2) 포함
거주(F-2)	준영구적		
동반(F-3)	준영구적	가족	배우자의 비자 유형에 근거/이들은 고용허가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도 분류 가능
재외동포(F-4)	준영구적	기타	
영주(F-5)	준영구적	기타	다른 준영구적 이주 범주의 비자로부터 이전된 사람들이라면 제외해야
결혼이민(F-6)	준영구적	가족	
기타(G-1)			
관광취업(H-1)	한시적	관광 취업	
방문취업(H-2)	한시적	한시적 근로	

출처: OECD의 국제이주 담당부서와의 이메일 교신을 통해서 얻음.

제 4 절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 방안

1. 한국의 체류자격 유형

한국에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자격은 활동내용에 따라 <표 4-3>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표 4-3> 체류자격 유형

계열	세부자격구분				
	A	A-1(외교)	A-2(공무)	A-3(협정)	
B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	D-1(문화예술)	D-2(유학) D-6(종교)	D-3(기술연수) D-7(주재)	D-4(일반연수) D-8(기업투자)	D-5(취재) D-9(무역경영) D-10(구직)
E	E-1(교수)	E-2(회화지도) E-6(예술홍행)	E-3(연구) E-7(특정활동)	E-4(기술지도) E-9(비전문취업)	E-5(전문직업) E-10(신원취업)
F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G	G-1(기타)				
H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자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2013.1.1 개정)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입국자는 3년이며 전문인력의 경우 회화지도 2년, 예술홍행 2년, 특정활동 3년이고 교수·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 등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4-4>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3.1.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관련)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 외교(A-1)	재임기간	18. 무역경영(D-9)	2년
2. 공무(A-2)	공무수행기간	18의2. 구직(D-10)	6개월
3. 협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19. 교수(E-1)	5년
		20. 회화지도(E-2)	2년
4. 사증면제(B-1)	협정상외의 체류기간	21. 연구(E-3)	5년
5. 관광통과(B-2)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22. 기술지도(E-4)	5년
6. 일시취재(C-1)	90일	23. 전문직업(E-5)	5년
7. 삭제<11.12.23>		24. 예술홍행(E-6)	2년
8. 단기방문(C-3)		25. 특정활동(E-7)	3년
9. 단기취업(C-4)		25의2. 삭제 <07.6.1>	
10. 문화예술(D-1)	2년	25의3. 비전문취업(E-9)	3년
11. 유학(D-2)	2년	25의4. 선원취업(E-10)	1년
12. 기술연수(D-3)	2년	26. 방문동거(F-1)	2년
		27. 거주(F-2)	3년
		28. 동반(F-3)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28의2. 재외동포(F-4)	3년
13. 일반연수(D-4)	2년	28의3. 영주(F-5)	상한 없음
		28의4. 결혼이민(F-6)	3년
14. 취재(D-5)	2년	29. 기타(G-1)	1년
15. 종교(D-6)	2년	30. 관광취업(H-1)	협정상외의 체류기간
16. 주재(D-7)	2년	31. 방문취업(H-2)	3년
17. 기업투자(D-8)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자료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013. 1. 1 개정

외국인의 체류유형을 보면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

분되며 단기체류는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이고 장기체류는 체류기간 91일 이상을 의미하며 영주는 체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이며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들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다음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주한 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 가족2.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 가족3. 대한민국 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

외국인등록 시기는 다음과 같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예) B-2(관광통과) 소지 캐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등록, 법무부 |
|--|

2. OECD기준에 따른 한국의 체류자격의 분류

<표 4-4>에서 보듯이 비자유형별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반복갱신이나 기간연장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계속될 수도 있으나 어떤 비자는 체류연장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OECD는 각국의 비자체계를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통해 국제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표준화된 분류의 기본틀은 ‘제외’, ‘한시적 체류’, ‘영구적·준영구적 체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제외는 등록외국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이며, 한시적 체류는 단기 체류로서 체류가 반복 갱신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준영구적 체류는 비자체계상으로는 기간을 정하여 체류를 허용하고 있지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반복갱신이 가능하거나 기간이 정함이 없이 체류가 가능한 범주를 의미한다.

그 동안 OECD의 이러한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국내 비자유형의 구분 및 유형별 체류외국인의 현황을 OECD에 제출하여 왔으며 이는 OECD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 게재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의 문제 등으로 그 동안 제출된 유형의 구분이 정확성 및 일관성 문제가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잘못 정리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체계에 입각한 비자의 유형구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외교, 공무, 협정, 사증면제 및 단기체류 비자는 등록외국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은 표준범주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이다. 유학비자는 정규과정의 교육이나 연구활동과 같은 특정의 연구에 해당하는 비자이며, 일반연수란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비자는 체류기간이 한시적이고 해당 비자로 체류

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귀국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 체류로 구분할 수 있다.

D비자 계열 중 이들 외의 나머지 비자는 모두 반복갱신이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에 준 영구적 특성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D-1)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비자이며 취재(D-5)는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비자이다. 종교(D-6)는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계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자와 대한민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이다.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은 외국의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계열사나 자회사에 근무하거나 한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인력, 그리고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사업을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전문인력 등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체류의 반복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문인력 취업비자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고용계약이 외국의 본사와 맺어진 것이어서 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시적 이주로 분류되고 있다.

E계열 비자 중 E-1~E-7비자는 전문외국인력 비자이다. 이들에게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국당시의 체류자격요건에 부합한 체류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이들은 한국내에서 반복 갱신하여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장기체류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들은 준영구적인 체류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5> OECD의 우리나라 비자별 이주 유형 구분 개선 방안 제안

비자	표준 범주	하위 범주	비고
외교(A-1)	제외		
공무(A-2)	제외		
협정(A-3)	제외		
사증면제(B-1)	제외		
관광·통과(B-2)	제외		
일시취재(C-1)	제외		
단기방문(C-3)	제외		
단기취업(C-4)	제외		
문화예술(D-1)	준영구적		반복갱신이 가능
유학(D-2)	한시적	유학생	
기술연수(D-3)	한시적	수련생	
일반연수(D-4)	한시적	유학생	
취재(D-5)	한시적	주재(한시적 근로)	
종교(D-6)	한시적	기타	반복갱신이 가능
주재(D-7)	한시적	주재(한시적 근로)	
기업투자(D-8)	준영구적	노동	반복갱신이 가능
무역경영(D-9)	한시적	기타	반복갱신이 가능
구직(D-10)	한시적	기타 한시적 근로	
교수(E-1)	준영구적	노동	
회화지도(E-2)	준영구적	노동	반복갱신이 가능
연구(E-3)	준영구적	노동	반복갱신이 가능
기술지도(E-4)	준영구적	노동	반복갱신이 가능
전문직업(E-5)	준영구적	노동	반복갱신이 가능
예술홍행(E-6)	한시적	노동	반복갱신이 가능
특정활동(E-7)	준영구적	노동	반복갱신이 가능
비전문취업(E-9)	한시적	기타 한시적 근로	반복갱신 체류의 제한
선원취업(E-10)	한시적	기타 한시적 근로	반복갱신 체류의 제한
방문동거(F-1)	준영구적	가족	가족(F-1-2) 포함/ 공무의 가사보조인은 제외
거주(F-2)	준영구적	가족	주로 영주자격의 가족으로 장기체류 가능
동반(F-3)	준영구적	가족	배우자의 비자 유형에 근거
재외동포(F-4)	준영구적	기타	반복갱신이 가능
영주(F-5)	준영구적	기타	다른 준영구적 이주 범주의 비자로부터 이전된 사람들 이라면 제외해야
결혼이민(F-6)	준영구적	가족	
기타(G-1)	-		유형별로 상이
관광취업(H-1)	한시적	관광 취업	반복갱신 체류의 제한
방문취업(H-2)	한시적	기타 한시적 근로	반복갱신 체류의 제한

주: OECD의 기준에 기초하여 한국의 비자특성을 고려하여 정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은 한시적 체류를 전제로 하고 있고 체류기간이 끝나면 귀국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장기체류나 반복갱신체류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 체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기본적으로 장기체류 가능자이거나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에게 부여하는 비자체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준영구적 체류자격을 갖는다. 다만 F-1비자 중 공무의 가사 사용인과 같이 비자체제내의 일부 체류자는 이주자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인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3. UN 권고안에 따른 한국 체류자격 분류

UN 권고안에서 이주자 유형 구분의 핵심적 기준은 거주기간 1년이다. 여기서 거주기간의 측정 방법은 실제 거주기간일 수도 있고, 의도된 거주기간일 수도 있으며, 거주허가 기간일 수도 있다. 실제 거주기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지체(time-lag)가 발생하고 의도된 거주기간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주허가 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허가 기간을 사용하는 것은 OECD기준과의 일관성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OECD기준에서처럼 거주허가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별 거주 상한을 기준으로 해서 UN 권고안에 따른 이주자 유형구분을 시도해본 결과가 <표 4-6>에 정리되어 있다.

<표 4-6> UN 권고안 적용 방안 제안

비자	유형 구분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외교(A-1)	제외	재임기간
공무(A-2)	제외	공무수행기간
협정(A-3)	제외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사증면제(B-1)	제외	협정상의 체류기간
관광·통과(B-2)	제외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일시취재(C-1)	제외	90일
단기방문(C-3)	제외	90일
단기취업(C-4)	제외	90일
문화예술(D-1)	장기	2년
유학(D-2)	장기	2년
기술연수(D-3)	장기	2년
일반연수(D-4)	장기	2년
취재(D-5)	장기	2년
종교(D-6)	장기	2년
주재(D-7)	장기	2년
기업투자(D-8)	장기	2년 또는 5년
무역경영(D-9)	장기	2년
구직(D-10)	단기	6개월
교수(E-1)	장기	5년
회화지도(E-2)	장기	2년
연구(E-3)	장기	5년
기술지도(E-4)	장기	5년
전문직업(E-5)	장기	5년
예술홍행(E-6)	장기	2년
특정활동(E-7)	장기	3년
비전문취업(E-9)	장기	3년
선원취업(E-10)	장기	1년
방문동거(F-1)	장기	2년
거주(F-2)	장기	3년
동반(F-3)	장기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재외동포(F-4)	장기	3년
영주(F-5)	장기	상한 없음
결혼이민(F-6)	장기	3년
기타(G-1)	-	-
관광취업(H-1)	단기	협정상의 체류기간
방문취업(H-2)	장기	3년

먼저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은 상주국 변경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자 집단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 밖에 기타(G-1)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자 유형구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단기적 이주자 유형으로는 구직(D-10)과 관광취업(H-1) 정도가 포함되고, 그 밖의 나머지 체류자격들은 모두 장기적 이주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OECD 기준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 등이 OECD 기준에서는 한시적임에 반해서 UN 권고안에서는 장기적 이주자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 그 밖에 OECD 기준에서는 한시적 이주자 유형으로 구분된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예술홍행(E-6), 주재(D-7)등이 장기적 이주자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도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4. UN 권고안과 OECD 기준에 따른 통합적 개선 방안

UN 권고안과 OECD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체류자격들에 대한 이주자 유형을 구분한 결과는 UN이나 OECD의 국제이주 통계 작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그 결과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자통계 작성의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현재에도 매년 작성되고 있는 OECD의 국제이주 통계 기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자통계 작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자통계는 우리나라의 이주정책에도 필요한 근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의 이주정책 수요도 반영하여 UN 권고안과 OECD 기준에 대해서 일정한 변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되고 있는 점은 OECD의 기준이 각국의 이주 상황이나 정책에 따라(특히 이민국가와 비이민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OECD의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 유형이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함축하고 있는 내용은 장기적 이주자라는 특성 때문에 비

이민국가에서는 1년 정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영구적·준영구적 이주 유형으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적용 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전문직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등은 영구적·준영구적 이주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그 용어가 갖는 부담 때문에 한시적 이주자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비이민국가들의 경우 한시적 이주자 유형은 계절적 근로자나 관광취업과 같이 극히 단기적인 이주자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가능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주자 유형을 단기적 이주자, 장기적 이주자로 구분하고, 장기적 이주자를 비영구적 이주자와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 유형들로 다시 구분하는 접근법을 취해보자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통계청의 출입국자통계에서 이주자 유형을 단기적 이주자, 장기적 비영주권자, 장기적 영주·준영주권자 등 3 가지로 구분하는 접근법이다. 단기적 이주자와 장기적 이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선은 UN 권고안에 따른 거주기간 1년이고, 비영주권자와 영주·준영주권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5년 이상의 체류허가기간을 얻을 수 있는가 여부로 설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장기적 비영주권자는 OECD 기준에서는 한시적 이주자이지만 UN 권고안에서는 장기적 이주자로 구분되는 집단들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OECD 기준에 의해 한시적 이주자였던 유학생이나 연수생의 경우에는 거주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적 비영주권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3 가지 이주자 유형에 대해서 이주 목적 범주를 기준으로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는 OECD 기준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영주·준영주권자 유형에 대해서는 고용 이주, 가족 이주, 인도주의적 이주, 기타(해외 동포, 은퇴자, 자립적 재산가 이주) 등으로 세분된 통계를 제공하고, 장기적 비영주권자 유형에서는 고용 이주, 교육훈련 이주, 가족 이주, 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단기적 이주는 관광취

업, 계절적 근로, 기타 등의 유형으로 세분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표 4-7>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자통계를 위한 이주자 유형 구분 제안

이주자 유형		기준	체류자격별 분포
비이주자		상주국 변경이 없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단기적 이주		거주기간 3개월-1년	구직(D-10), 관광취업(H-1)
장기적	비영주	거주기간 1-5년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예술홍행(E-6),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비전문직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영주·준영주	거주기간 5년 이상 가능	문화예술(D-1), 기업투자(D-8),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이주자 유형별 유량과 저량은 수준 변수 외에 시계열적 변화율을 통해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로 기능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그 통계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 가능한 다른 통계들을 작성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OECD 국제이주 통계에 근거해 보면,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들로는 전체 인구 대비 이주자(장기 이주자, 영주·준영주권자)의 비율, 근로연령 인구 대비 이주자(장기 이주자, 영주·준영주권자)의 비율, 인구 증가율에 대한 순 이주자 기여 비율 등이다.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외국인수와 외국출생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국제적으로 비교가 필요한 통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이주자의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통계들도 국제비교성이 가능한 통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이주자 유형들의 성별 분포와 고학력 비중, 국적별 분포, 가족 동반 비율,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 통계로서 고용률과 실업률 등이 그 대표적인 통계들이다. 이들 통계들은 국제비교성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주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통계들이기도 하다.

제 5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정도를 평가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OECD 국제이주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변수들 중 누락된 변수들은 (1) 이주자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보 (2) 고학력 외국 출생 인구의 비중, (3) 영주 이주자 유입량의 인구 증가 대비 비율, (4) 외국 출생 인구, (5) 출신국별 외국출생 인구의 저량 (6) 이전 국적별 외국인 국적취득자 (7)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량, (8) 유학생의 지위 변경 등이다. 이들 변수들은 기존의 행정통계나 설문조사 자료 등을 통해서 입수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보다 통계집계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다.

둘째, OECD가 이주자들을 유형화하기 위해 자신의 국제이주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 체류자격체계에 적용한 분류 결과에 약간의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정하였다. (1) 문화예술(D-1)은 제외 집단에서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 유형으로 변경하였다. (2) 선원취업(E-10)과 취재(D-5)는 제외 집단에서 한시적 이주자 유형으로 변경하였다.

셋째, 비이민국가이지만 이주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주 상황을 감안해서 OECD 기준에 UN 권고안을 통합하여 이주자 유형을 제외 집단, 단기적 이주자, 장기적 비영주권자, 영주·준영주권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유형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외 집단은 상주국을 변경하지 않은 입국자들로서 UN 권고안이나 OECD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제외 집단의 기준이다. (2) 단기적 이주자는 거주기간이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이주자들로 규정되어 있다. (3) 장기적 비영주권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 예상되는 이주자 집단이다. (4) 영주·준영주권자는 5년 이상 거주가 허용될 수 있는 이주자 집단들이다.

넷째, 이들 유형 구분 외에 이주 목적 범주들을 이용해서 세분화하고 있다. OECD의 접근법을 원용해서 영주·준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고용 이주, 가족 이주, 인도주의적 이주, 기타 등으로 세분하고, 장기적 비영주권자 유형에서는 고용 이주, 교육훈련 이주, 가족 이주, 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단기적 이주는 관광취업, 계절적 근로, 기타 등의 유형으로 세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이들 이주자 유형 중 영주·준영주권자와 장기적 이주자 유형(비영주권자 + 영주·준영주권자) 등은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다른 통계들을 작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들로는 전체 인구 대비 이주자(장기 이주자, 영주·준영주권자)의 비율, 근로연령 인구 대비 이주자(장기 이주자, 영주·준영주권자)의 비율, 인구 증가율에 대한 순 이주자 기여 비율 등이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외국인수와 외국출생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보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섯째, 이주자의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통계들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런 통계들로는 각 이주자 유형들의 성별 분포와 고학력 비중, 국적별 분포, 가족 동반 비율,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 통계로서 고용률과 실업률 등이다. 이들 통계들은 국제비교성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주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통계들이기도 하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정도에 대해서 진단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출발점이 통계청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인 『출입국자 통계 2008년 정기 통계품질진단』(진기남·천새롬 저)의 지적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 보고서의 지적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도출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이주 통계에 관한 UN 권고안과 OECD 기준을 검토한 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가 설정했던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기준의 출입국자통계의 통계작성 기준 분석
- 2) 국제통계(OECD)의 출입국자통계와 국내 통계의 불일치 현황 분석
- 3) 국내통계의 국제비교 적합성이 미흡한 내용을 중심으로 원인을 진단
- 4) 국제비교 적합성제고를 위한 통계수집방법의 개선방안 : 단기, 중장기 과제
- 5) 국제비교 적합성제고를 위한 통계산출방법의 개선방안 : 단기, 중장기 과제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본 연구는 국제기준에 관한 문헌연구, 해외전문가의 의견수렴, 관련기관 담당자 회의 및 방문, 통계자료분석 및 재개념화, 시행기관과의 정례회의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 2 절 연구 결과의 요약

1. 제 2 장 연구 결과의 요약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에 대한 행정통계는 법무부, 통계청,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서 보고하고 있다. 이들 행정통계들은 통계작성의 목적에 따라 개념적 범주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외국인력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가령, 통계청의 외국인고용 조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자통계, 안전행정부의 외국인 주민현황통계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통계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통계청은 조사통계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행정통계와는 차이가 있으며 취업자격 외국인현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제비교 통계로는 출입국자통계가 타당하나 경제활동상태의 관점에서 보면 통계청의 자료가 유용하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통계는 지역별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들 통계는 작성시기 및 작성방법에 따라 외국인력 규모가 차이가 난다.

유학생 통계도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법무부의 출입국자통계와 교육부 통계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출입국자통계는 유학생 비자로 접근하고 있는데 비해, 교육부는 재학중인 유학생통계로 집계하며 여기에는 유학비자 외에 가족동반 등의 비자로 입국하여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결혼이민자 통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책대상자로서의 결혼이민자에는 국적미취득자와 국적취득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외국인 정보에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나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집계자료에는 국적취득여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출입국자통계나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통계는 주로 외국인에 초점을 맞춘 통계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국적취득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있고, 영주권을 신청한

동포도 증가하는 등 체류자격의 변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의 집계는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주자라는 관점에서 OECD에서 구분하고 있는 체류자격 유형별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이민정책 수립에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시적 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현황, 준 영구적 체류자 통계, 국적취득자의 통계를 정립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민자 통계는 정책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활용자의 이해를 돕고 정확한 통계의 활용을 위해서는 메타 데이터(meta data)를 산출하여 통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 기관에서 산출하고 있는 각종 이주자 통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의 목적 및 수집방법, 자료의 특성에 대해 메타 데이터를 산출하여 이 통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제 3 장 연구 결과 요약

UN의 권고안과 OECD 기준은 출입국가통계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기준이다. 그 중 UN의 권고안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OECD 기준은 이주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중 UN의 국제이주 통계는 간헐적으로만 산출되고 있지만 OECD 기준은 OECD에 의해서 매년 산출되는 국제이주 통계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OECD 기준이 주된 분석 대상이 되었다. 그 분석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UN의 권고안이나 OECD 기준은 모두 개별 국가의 행정통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행정통계가 각 국가들의 이주정책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국가간 이주통계의 표준화 정도가 낮은 상태에 있다. 동시에 UN의 권고안이나 OECD 기준 모두 각국의 행정통계가 기본적으로 각국의 이주정책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행정통계를 변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 결과 UN의 권고안이나 OECD 기준 모두 출입국자통계 자료의 수집보다 집계방식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UN의 권고안이나 OECD 기준 모두 출입국자통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해서 체류자격이나 비자의 분류체계의 표준화를 시도하지도 않고 또 그에 대한 표준적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에게 체류자격이나 비자의 분류체계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출입국자 통계 2008년 정기 통계품질진단』(진기남·천새롬 저, 2008)이 제기한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 필요성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체류자격이나 비자의 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는 접근법보다 출입국자통계의 집계방식 개선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UN의 권고안이나 OECD 기준 모두 출입국자통계로의 소스로서 주민(외국인)등록체계, 출입국관리 행정통계, 기타 행정 통계, 설문조사 등을 고려하면서, 그 중 어느 정보원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OECD의 경우에는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출입국관리 행정통계의 비중을 더 높게 보고 있다. 그와 동시에 출입국관리 행정통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민(외국인)등록체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소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기본 소스는 출입국 관리 행정통계에 둘 필요가 있다.

UN 권고안과 OECD 기준은 모두 이주자를 상주국을 변경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상주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주국을 바꾸지 않는 입국자 유형들, 즉, 이웃 나라로 매일 또는 매주 일하러 가는 국경근로자(border workers), 최종 목적지가 다른 나라인 경유자, 여행객, 사업상 방문객, 친지방문, 질병 치료 목적상 방문, 종교적 순례 등과 전통적인 제외 집단들인 공무상의 방문자와 동반 가족, 주둔군과 동반 가족 및 피용자, 유목민(nomad) 등은 이주자로 보지 않고 있다.

UN 권고안은 이주자를 장기 이주자와 단기 이주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 구분의 기준선은 거주기간 1년이다. 따라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장기 이주자, 그 미만 거주하는 외국인은 단기 이주자로 분류된다. 한편 UN 권고안은 1년의 거주기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주기간, 의도하는 거주기간, 거주 허용기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UN의 권고안과 달리 OECD 기준은 이주자를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와 한시적 이주자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는 (1) 입국 시 영주권을 받은 사람, (2) 한시적 거주허가를 받았지만 다소 계속 갱신이 가능한 사람, (3) 자유 이동권을 가진 사람(가령, EU 회원국 내의 EU 시민권자들) 등이고, 한시적 이주자는 (1) 갱신될 수 없거나 제한된 수준에서만 갱신될 수 있는 한시적 거주허가를 받은 사람(계절적 근로자, 유학생, 교환교수 및 교환연구자, 수련생 등), (3) 자유 이동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시적 거주허가를 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이유로 입국한 사람 등이다. OECD 기준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유학생은 모두 한시적 이주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이었던 OECD의 이주자 구분 기준이 각 회원국의 이주정책이나 이주자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민국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만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로 분류되는 반면에 독일이나 스웨덴, 영국 등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고용 이주자들도 반복 갱신이 가능하다면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출입국자통계에서 거주기간 1년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이주자 유형이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로 명명되고 있어서 거주기간 1년 이상의 이주자를 그 유형으로 분류하는 정책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에서 이주자를 유형 구분할 때 OECD 기준과 UN 권고안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3. 제 4 장 연구 결과 요약

제 4장에서는 UN 권고안과 OECD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정도를 평가해보고,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OECD 국제이주 통계를 작성하는데 요구되는 정보들 중 누락된 변수들은 (1) 이주자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보 (2) 고학력 외국 출생 인구의 비중, (3) 영주 이주자 유입량의 인구 증가 대비 비율, (4) 외국 출생 인구, (5) 출신국별 외국출생 인구의 저량 (6) 이전 국적별 외국인 국적취득자 (7)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량, (8) 유학생의 지위 변경 등이 있는데, 이들 변수들은 기존의 행정통계나 설문조사 자료 등을 통해서 입수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보다 통계집계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OECD가 이주자들을 유형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국제이주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 체류자격체계에 적용한 분류 결과에 발견되는 약간의 오류들을 정정하였다. (1) 문화예술(D-1)은 제외 집단에서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 유형으로 변경하였다. (2) 선원취업(E-10)과 취재(D-5)는 제외 집단에서 한시적 이주자 유형으로 변경하였다.

비이민국가이지만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주 상황을 감안해서 OECD 기준에 UN 권고안을 통합하여 이주자 유형을 제외집단, 단기적 이주자, 장기적 비영주권자, 영주·준영주권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유형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외 집단은 상주국을 변경하지 않은 입국자들로서 UN 권고안이나 OECD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제외집단 기준이다. (2) 단기적 이주자는 거주기간이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이

주자들로 규정되어 있다. (3) 장기적 비영주권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 예상되는 이주자 집단이다. (4) 영주·준영주권자는 5년 이상 거주가 허용될 수 있는 이주자 집단들이다.

이들 유형 구분 외에 이주 목적 범주들을 이용해서 각 이주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이는 OECD의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영주·준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고용 이주, 가족 이주, 인도주의적 이주, 기타 등으로 세분하고, 장기적 비영주권자 유형에서는 고용 이주, 교육훈련 이주, 가족 이주, 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단기적 이주는 단기 연수, 관광취업, 계절적 근로, 기타 등의 유형으로 세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이주자 유형 중 영주·준영주권자와 장기적 이주자 유형(비영주권자 + 영주·준영주권자) 등은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다른 통계들을 작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런 통계들로는 전체 인구 대비 이주자(장기 이주자, 영주·준영주권자)의 비율, 근로연령 인구 대비 이주자(장기 이주자, 영주·준영주권자)의 비율, 인구 증가율에 대한 순 이주자 기여 비율 등이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외국인수와 외국출생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보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주자의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통계들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통계들로는 각 이주자 유형들의 성별 분포와 고학력 비중, 국적별 분포, 가족 동반 비율,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 통계로서 고용률과 실업률 등이다. 이들 통계들은 국제비교성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주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통계들이기도 하다.

제 3 절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 방안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도출된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각 개선방안들을 단락으로 구분하여 간명한 방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기본적인 개선 방향: 『출입국자 통계 2008년 정기 통계품질진단』(진기남·천새롬 저)의 국제비교성 제고 요구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향
 -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들로는 체류자격과 비자의 분류체계를 국제적 표준에 맞추는 방법, 자료 수집 과정을 개선하는 방법, 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 등이 있다.
 - 그 중 체류자격과 비자의 분류체계를 국제적 표준에 맞추는 방법이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그 방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체류자격과 비자의 분류체계는 통계의 국제비교성보다 더 중요한 이주정책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국가의 주권사항으로서 통계의 국제비교성을 위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 점은 UN 권고안이나 OECD 기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UN 권고안이나 OECD 기준 모두 각국에서 주어진 행정통계를 전제로 해서 국제이주 통계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이런 사정 때문에 UN이나 OECD 모두 표준화된 체류자격과 비자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사정 때문에 체류자격과 비자의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자료 수집 과정의 개선이나 통계 집계 과정의 개선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통계의 내용들

을 분석해보면, OECD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미 대부분 행정 및 조사통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 제고 방안은 주로 통계 집계 방식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주자들의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변수들은 행정통계에서 제한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 변수들도 외국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통계청의 조사통계를 통해서 입수가 가능한 정보들이다.

○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소스와 거주기간 측정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체계와 출입국관리 행정통계, 외국인에 대한 조사통계 등이 있다. 그 중 어느 쪽을 통계 소스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동안 다수 국가와 OECD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 행정통계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보완적으로 외국인등록체계와 외국인에 대한 조사통계는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입국관리 행정통계를 사용하게 되면, 이주자 유형 구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주기간의 측정으로는 거주허가 기간이 주로 사용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이주자 유형구분은 체류자격별로 결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체류자격별 거주허용기간이 중요한 기준으로 부각된다.

○ OECD 국제이주 통계에 대한 누락 정보와 개선 방안

- (1) 이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정보 (2) 고학력 외국 출생 인구의 비중, (3) 영주 이주자 유입량의 인구 증가 대비 비율, (4) 외국 출생 인구, (5) 출신국별 외국출생 인구의 저량 (6) 이전 국적별 외국인 국적 취득자 (7)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량, (8) 유학생의 지위 변경 등이 누락변수들이다.
- 이들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행정통계나 조사통계 자료 등을 통해

서 입수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보다 통계집계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다만, 외국출생인구, 외국출생인구의 고학력 비중 등의 정보에 대한 통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 OECD 국제이주 기준을 우리나라의 출입국자통계에 적용하는데 발생한 오류의 수정이 필요한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5-3-1> 참조).
- 문화예술(D-1)은 제외 집단에서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 유형으로 변경하였다.
- 선원취업(E-10)과 취재(D-5) 등은 제외 집단에서 한시적 이주자 유형으로 변경하였다.
- 그 밖에 출입국자통계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체류자격의 수준에서 복수의 이주자 유형이 혼재된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다.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 등이 대표적인 예들인데, 보다 엄격한 통계를 위해서는 이들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세부분류까지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방문동거(F-1)에는 공무(A-2)의 가사보조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집단은 UN 권고안이나 OECD 기준에서 제외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에 속하는 이주자들의 수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OECD 국제이주 통계 기준이 적용되는 관행을 감안하면, 그러한 정도의 오차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체류자격별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나라 출입국자통계의 국제비교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표 5-1> OECD의 우리나라 비자별 이주 유형 구분 개선 방안

비자	기존의 구분법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구분법	
	표준 범주	하위 범주	표준 범주	하위 범주
외교(A-1)	제외		기존과 동일	
공무(A-2)	제외		기존과 동일	
협정(A-3)	제외		기존과 동일	
사증면제(B-1)	제외		기존과 동일	
관광·통과(B-2)	제외		기존과 동일	
일시취재(C-1)	제외		기존과 동일	
단기방문(C-3)	제외		기존과 동일	
단기취업(C-4)	제외		기존과 동일	
문화예술(D-1)	제외		준영구적	고용
유학(D-2)	한시적	유학생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기술연수(D-3)	한시적	수련생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일반연수(D-4)	한시적	유학생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취재(D-5)	제외		한시적	주재
종교(D-6)	한시적	기타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주재(D-7)	한시적	주재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기업투자(D-8)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무역경영(D-9)	한시적	한시적 근로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구직(D-10)	한시적	한시적 근로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교수(E-1)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회화지도(E-2)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연구(E-3)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기술지도(E-4)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전문직업(E-5)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예술홍행(E-6)	한시적	한시적 근로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특정활동(E-7)	준영구적	고용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비전문취업(E-9)	한시적	한시적 근로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선원취업(E-10)	제외		한시적	기타
방문동거(F-1)	준영구적	가족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거주(F-2)	준영구적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동반(F-3)	준영구적	가족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재외동포(F-4)	준영구적	기타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영주(F-5)	준영구적	기타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결혼이민(F-6)	준영구적	가족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기타(G-1)			-	
관광취업(H-1)	한시적	관광 취업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방문취업(H-2)	한시적	한시적 근로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 정리된 출입국자통계의 개선 방안
 - OECD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 정리된 우리나라의 출입국자통계를 개선하는 것 외에 우리나라 정부의 출입국자통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개선의 내용이 기존 통계를 변경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통계표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통계연보』보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출입국자통계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통계가 적절하게 제공되면,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바로 그 통계를 인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도 있다.
 - 비이민국가이지만 이주자의 급격한 증가를 목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이주 상황을 감안해서 OECD 기준에 UN 권고안을 통합하여 이주자 유형을 제외집단, 단기적 이주자, 장기적 비영주권자, 영주·준영주권자 등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각 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외 집단은 상주국을 변경하지 않은 입국자들이다. (2) 단기적 이주자는 거주기간이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이주자들이다. (3) 장기적 비영주권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 예상되는 이주자 집단이다. (4) 영주·준영주권자는 5년 이상 거주가 허용될 수 있는 이주자 집단들이다.
 - 이들 유형 구분 외에 이주 목적 범주들을 이용해서 각 이주유형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영주·준영주권자의 경우에는 고용 이주, 가족 이주, 인도주의적 이주, 기타 등으로 세분하고, 장기적 비영주권자 유형에서는 고용 이주, 교육훈련 이주, 가족 이주, 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단기적 이주는 단기 연수, 관광취업, 계절적 근로, 기타 등의 유형으로 세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각 이주자 유형에 포함되는 체류자격들은 <표 5-2>의 내용과 같다.

<표 5-2> 체류자격별 이주자 유형 구분 제안

이주자 유형	체류자격별 분포	
비이주자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단기적 이주	구직(D-10), 관광취업(H-1)	
장기적	비영주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예술홍행(E-6),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비전문직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영주·준영주	문화예술(D-1), 기업투자(D-8),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이상의 통계들을 정리하는 표를 예시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이주 유형별 출입국자통계 정리 방안 제안(예시)

	영주·준영주	인원수(단위: 천명)		분포(%)	
		2012	2013	2012	2013
장기적 이주	고용				
	가족(동반가족 포함)				
	인도주의적				
	기타				
	전체				
	비영주	인원수(단위: 천명)		분포(%)	
		2012	2013	2012	2013
	고용				
	가족(동반가족포함)				
	유학/장기 연수				
기타					
전체					
단기적 이주(범주별 구분)		인원수(단위: 천명)		분포(%)	
		2012	2013	2012	2013
단기 연수생					
관광취업자					
계절적 근로자					
기타					
비호신청자 유입량		2012	2013	2012	2013

- 이들 이주자 유형 중 영주·준영주권자와 장기적 이주자 유형(비영주권자 + 영주·준영주권자) 등을 이용해서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다른 통계들을 작성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계에는 전체 인구 대비 이주자(장기 이주자, 영주·준영주권자)의 비율, 근로연령인구¹³⁾ 대비 이주자(장기 이주자, 영주·준영주권자)의 비율, 인구 증가율에 대한 순이주자¹⁴⁾ 기여 비율 등이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외국인수와 외국출생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보고될 필요가 있다.
- 이주자의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통계들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통계들로는 각 이주자 유형들의 성별 분포와 고학력(tertiary education)¹⁵⁾ 비중, 국적별 분포, 가족 동반 비율,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 통계로서 고용률과 실업률 등이 있다.

13) 근로연령인구는 15-64세의 연령대 인구를 의미한다.

14) 순이주자(net migration)는 이주해오는 외국인과 내국인에서 이주해가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뺀 값을 의미한다.

15) OECD 통계에서 고학력(tertiary education)은 대학교뿐 아니라 전문대처럼 2년 이상의 이수기간이 요구되는 실제적, 기술적, 직업적 훈련을 받는 것도 포함한다.

<표 5-4> 출입국자통계 국제비교성 제고방안(요약)

구분		현행	개선 방안	
OECD 통계	정보 누락	누락	누락정보 확보방안 제시 (1) 이주자의 노동시장성과 정보 (2) 고학력 외국 출생 인구 비중 (3) 영주 이주자 유입량의 인구 증가 대비 비율 (4) 외국 출생 인구 (5) 출신국별 외국출생 인구 저량 (6) 이전 국적별 외국인 국적취득자 (7)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유입량 (8) 유학생의 지위 변경	
	체류자격별 유형 구분	문화예술(D-1)	제외 집단	영구적·준영구적 이주자
		선원취업(E-10) 취재(D-5)	제외 집단	한시적 이주자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	유형 혼재	세분류로 구분
국가통계포털 자료	유형 구분	기간 기준	이주 (3월)	(1) 단기 이주자(3개월-1년), (2) 장기 비영주(1년-5년), (3) 영주(5년 이상)
		이주목적 기준	없음	(1) 고용이주 (2) 가족이주 (3) 교육훈련이주 (4) 인도주의적 이주 (5) 기타
	통계 추가	없음	없음	(1)기본 정보: 전체 인구 대비 장기 이주자(영주권자)의 비율, 근로연령인구 대비 장기 이주자(영주권자) 비율, 인구 증가율에 대한 순 이주자 기여 비율 (2)이주자 유형의 구성: 성별 분포, 고학력 비중, 국적별 분포, 가족 동반 비율, (3)노동시장 성과 통계: 고용률, 실업률
거주기간 측정방안		체류자격별 거주허용기간을 기준으로 측정		
출입국자통계 소스		출입국관리 행정통계를 사용		
기본적인 개선 방향		출입국자통계 집계 과정의 개선에 초점		

참고문헌

- 법무부, 2013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13
- 통계청 품질관리 홈페이지, <http://kostat.go.kr/quality>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http://codi.stat.go.kr>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박성일(2012) 「국제비교를 위한 국제이주 통계: 현황과 과제」 IOM이
민정책연구원
- 이규용 외(2010), 「외국인 고용통계 개선방안」 통계청
- 진기남·천새롬(2008) 『출입국자 통계 2008년 정기 통계품질진단』 통
계청
- Fron, P., G. Lemaitre, T. Lirbig, and C. Thoreau(2008) Standardized
Statistics on Immigration Inflows: Results, Sources, and Methods,
OECD
- Lemaitre, G.(2005) The Comparability of International Migration
Statistics: Problems and Prospects, OECD
- Lemaitre G., and C. Thoreau(2006) Estimating the Foreign-born
Population on a Current Basis, OECD